
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판례분석 및 분쟁조정 유형화 제안

목 차

| | |
|--|------------|
| 요약 | 1 |
| I. 서론 | 4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
| 3. 주요 내용 | 10 |
| II. 데이터 분쟁판례 분석 | 15 |
| 1. 민사판례 분석 | 15 |
| 2. 행정판례 분석 | 63 |
| III. 데이터 관련 유사 영역 분쟁조정사례의 검토 및 제안 | 85 |
| 1. 유사 영역 분쟁조정사례 검토의 의의 | 85 |
|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 88 |
| 3.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 | 101 |
| 4.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 116 |
| 5. 상사중재 사례 | 125 |
| IV. 분쟁조정 유형화 제안 | 130 |
| 1.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 유형의 정리 및 유형화 | 130 |
| 2. 데이터 분쟁 유형별 분류체계 제안 | 144 |
| V. 결론 | 147 |

표 목차

| | |
|--------------------------------|-----|
| 〈표 4-1〉 분쟁 유형별 민사소송 판례 | 132 |
| 〈표 4-2〉 분쟁 유형별 행정소송 판례 및 기타 사례 | 138 |
| 〈표 4-3〉 데이터 분쟁 유형 분류체계 | 145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2015~2023년) | 5 |
| [그림 1-2]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전망 | 5 |
| [그림 4-1] 데이터 분쟁절차 흐름도 | 146 |

「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판례분석 및 분쟁조정 유형화 제안」 요약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데이터 경제의 확산은 높은 경제적 가치와 혁신 가능성 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소유권, 공정한 가치 평가 등 법적·제도적 과제를 동반
 - 데이터 활용 확대 및 생성형AI 기술 고도화로 데이터의 생성 주체, 책임 소재 및 2차 활용 범위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쟁점도 계속 등장
- 데이터 분쟁을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한계가 존재
 - 데이터산업법에 근거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전반에 걸친 관련 갈등 해결을 지원
- 현행 제도는 인지도 부족과 법적 강제력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요구
 - 데이터 관련 판례 및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분쟁 조정 유형을 정리하고 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도출 필요

데이터 분쟁판례 및 유사 사례

- 민사소송 판례 중 데이터와 관련 사례는 허위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사건, 데이터의 무단 활용이 문제 된 사건 등 총 11건,
 - 행정소송 등에서는 허위 데이터 생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처분 사건, 데이터 형식 및 범위 불일치로 지원금을 환수한 사건 등 총 6건,

- 개인정보 및 저작권 위반이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만한 사건으로 보이는 유사 영역에서의 사례 총 10건을 발굴·분석
- 데이터 거래, 생산, 활용 등으로 분쟁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명확한 구분은 어려움
- 데이터의 거래나 활용은 데이터의 수집·생산으로부터, 데이터의 활용은 거래를 통해 이루어져 대체로 중첩된 형태가 대부분

분쟁조정 유형화 제안

- 분쟁의 여지가 있는 쟁점을 위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제시
- (생산 관련 분쟁) 원본 데이터 제공 거부, 허위 데이터 생산
- (거래 관련 분쟁) 데이터 제공 중단, 데이터 권한·범위 분쟁
- (활용 관련 분쟁) 무단 활용 및 영업비밀 침해, 데이터 소실 및 파기

< 데이터 분쟁 유형 분류체계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생산 | 데이터 생산 불능 | |
| | 허위 데이터 생산 | 데이터 윤리 |
| | 불완전 데이터 생산 | 데이터 품질 하자, 데이터 형식 하자, 데이터 일부 생산, 제3자 권한 침해 |
| | 데이터 제출 | 데이터 제출 의무 확인, 데이터 미제출, 데이터 불완전 제출, 허위 데이터 제출 |
| 거래 | 데이터 제공 불능 | 데이터 미보유, 데이터 손실, 제3자 권한 침해 |
| | 데이터 불완전 제공 | 데이터 사용 제한, 저품질 데이터 제공, 데이터 수량 부족, 제3자 권한 침해 |
| | 무권한 이전 | 권한 없는 거래(판매), 권한 없는 단순 제공/공유, 권한을 초과한 이전 |
| 활용 | 무권한 활용 | 권한 없이 활용, 권한을 초과한 활용 |
| 기타 | 무권한 보유 | 권한 없이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 도과(데이터 삭제) |

○ 데이터 분쟁 유형 중 자주 나타나는 사례별 분쟁해결방안을 조기에 모색하기 위한 데이터 분쟁절차 흐름도를 제안

〈 데이터 분쟁절차 흐름도 〉

| 1. 데이터 유형 확인 | 2. 계약 및 법적 근거 확인 | 3. 쟁점 분석 | 4. 해결 방식 판단 기준 정립 | 5. 실질적 해결안 도출 | 6. 조정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연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또는 복합적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존부 및 내용 확인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저촉 여부 확인 • 비공식적 합의의 법적 효력 검토 • 신의칙 등 일반 원칙 적용 가능성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쟁점 포함하여 유형별 쟁점 동시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구제 내용 구체화 • 당사자의 우선적 해결 목표 설정 • 사실·권리관계 명확성에 따라 조정 적합성 여부 판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반환, 접근 회복, 공동 활용, 수정/삭제, 이용조건 조정 등 • 신속한 비금전적 조치 포함하여 조정 과정에서 도출가능한 실효적 해결 방안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성립 시 이행관리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제도 개선 의견 제시 • 사례 축적하여 정책 피드백 루프 형성 |

시사점

- 데이터 관련 분쟁이 복합화·유형화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개별 법령 중심의 분절된 조정 보다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개편 필요
 - ※ 개인정보, 저작권, 공공데이터 등 한 사건 안에서 중첩되어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행정기관의 조정 참여 가능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와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조정 유인 강화 제도 운영을 통해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 ※ 「국가소송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지휘 요건 등이 조정의 실질적 한계로 작용
- 다양한 데이터 분쟁을 신속·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적 기구로서 사무 범위 확대 및 조정 권한을 명확화할 필요
- 실질적 해결 매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조정의 접근성·전문성·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 병행 필요

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판례분석 및 분쟁조정 유형화 제안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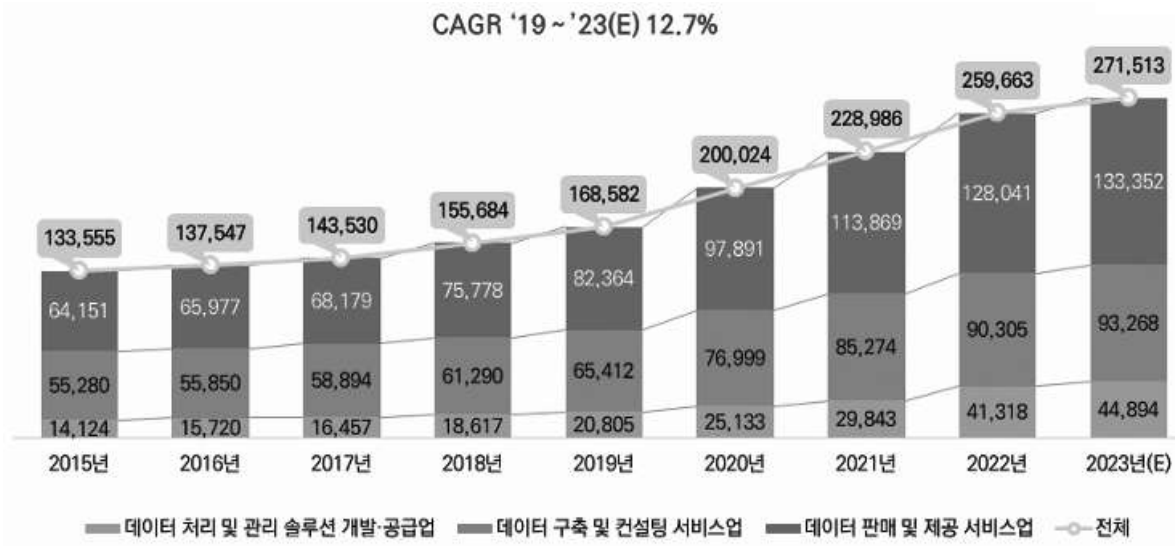
- 데이터는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자원이자, 핵심 동력으로 평가됨
 - 데이터는 산업 전반에서의 의사결정 고도화,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혁신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또한 공공서비스, 의료, 금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
- 이처럼 데이터의 가치가 빠르게 증대됨에 따라, 국내 데이터 산업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23년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 시장은 약 27.15조 원을 기록하며,¹⁾ 2019년부터 연평균 21.2%의 성장률을 보였음
 - 2025년에는 약 34.4조 원,²⁾ 2028년에는 약 49.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https://iitp.kr/kr/1/knowledge/statisticsView.it?masterCode=publication&searClassCode=K_STAT_01&identifier=02-008-240531-000001>(최종 접속일: 25.03.21.).

2) 한국유통신문, “2025년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과 글로벌 동향, 시장 성장과 미래 전략 분석”, 2025.02.06.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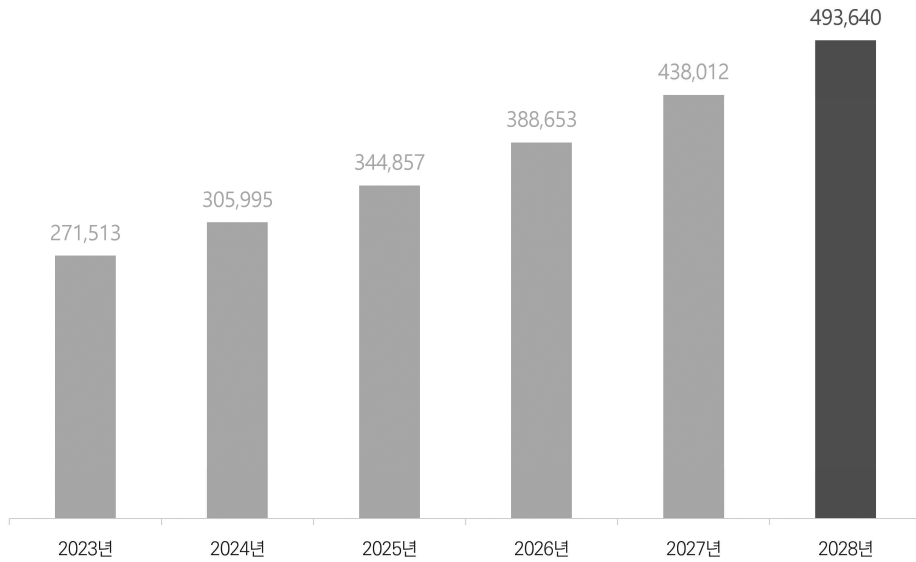
[그림 1-1]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2015~2023년)³⁾

(단위 : 억 원)



[그림 1-2]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전망⁴⁾

(단위 : 억 원)



3)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4년도 데이터산업 백서」, 2024, 74면.

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4년도 데이터산업 백서」, 2024, 75면의 그림을 재구성하였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가공·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임
- 그러나 데이터 경제의 확산은 높은 경제적 가치와 혁신 가능성만큼이나 법적·제도적 과제를 동반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소유권 문제, 공정한 가치 평가 등은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됨
 - 특히 과거에는 단순한 부수적 자원으로 인식되던 데이터가 이제는 독립적인 경제재로서 거래·투자·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새로운 규범 체계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데이터 관련 분쟁 증가

-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기업 간 데이터 경쟁, 데이터 소유권 및 활용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임
 - 개인과 기업, 기업 간, 국가와 기업 간 데이터 관련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① 개인정보 분쟁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갈등
 - ② 데이터 활용 및 권리 분쟁 : 데이터의 생성자·관리자·제공자 간 권리 충돌
 - ③ A.I. 학습데이터 분쟁 :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편향성 문제 등
 - ④ 플랫폼 기업 간 데이터 독점 및 공정경쟁 분쟁
 -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분쟁은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아울러, 생성형 A.I. 및 I.o.T. 센서 네트워크 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데이터의 생성 주체, 책임 소재 및 2차 활용 범위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쟁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

- 2025년 3월부터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사업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분쟁이 한층 더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됨⁵⁾
- 분쟁의 당사자 또한 기업을 넘어 소비자, 공공기관, 플랫폼 운영자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이해관계 조정과 조정 절차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고도화와 분쟁의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판례 분석을 통한 분쟁 유형의 정리와 법·제도 개선 방향의 제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한계

- 데이터 분쟁을 통상적인 민사·형사·행정 관련 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서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 관련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데이터산업법 제34조)
 - 데이터 분쟁조정은 제3자인 중립적인 조정기구가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임(데이터산업법 제38조제3항)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범위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 관련 분쟁, 개인정보 관련 분쟁, 저작권 관련 분쟁을 제외한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전반에 걸친 사안으로 구성됨
- 다만, 현행 제도는 인지도 부족과 법적 강제력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요구됨
 - 특히 데이터 관련 분쟁은 개인정보, 저작권 등 기존 분야와 중첩되거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조정 절차의 접근성과 활용성에서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존재함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25.03.13.),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 따라서 데이터 관련 판례와 함께 유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분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조정 기준 마련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노력이 요구됨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련 판례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분쟁 조정 유형을 정리하고 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로는 원칙적으로 최근 3~4년 이내의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데이터 분쟁 유형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벗어난 사례도 일부 포함하였음
- 내용적 범위로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사소송·행정소송 판례⁶⁾와 기타 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음

6) 형사 판례는 검사가 기소한 사안이므로 이를 검토하여 조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는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제에 회부할 수 있는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민사적 분쟁 해결의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 현재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어서 데이터에 관한 분쟁 조정에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형사 사건에 관한 조정은 기술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사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가 이루어지게 되며 해당 조정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정 결과에 따른 재판상 화해 효력과 같은 집행력에 대한 제도적 차이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형사 판례 및 형사 조정 사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데이터산업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저작권 등 다양한 법적 영역이 중첩되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는 관련 법령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분쟁 사례를 폭넓게 다루고자 하였음
- 다만, 분석의 대상이 되는 판례와 사례를 조사한 결과, 데이터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진 판례 및 사례 자체가 많지 않고, 행정 판례의 경우에는 법치행정이라는 행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정과 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그 외의 판례와 사례도 개인정보·저작권·계약법 등 다양한 법적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데이터 분쟁 유형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나. 연구의 방법

- 데이터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기능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분쟁 해결 방식과 사법적 판단의 흐름을 분석함
- 연구는 ‘판례 및 유사사례 분석 → 시사점 도출 → 분쟁 유형화 및 제언’의 순차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례별로 시사하는 법적 쟁점과 조정 가능성,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함
- 연구는 (가)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분쟁의 유형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나) 분쟁 유형에 따라 시사점을 도출한 후, (다) 데이터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되었음

3. 주요 내용

가. 주요 판례 및 사례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민사소송·행정소송 판례와 기타 사례를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및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민사소송과 관련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데이터 생산 : ① 용역 검증용 원본 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한 사례, ② 데이터 전체를 허위로 생산하여 계약 상대방을 속인 사례, ③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생산하였으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의도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사례
 - 데이터 거래: ① 데이터 제공자가 제공 계약에 따른 조치를 중단한 사례, ② 일정한 데이터를 두고 연속적 이용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 중 일부가 종료된 사례
 - 데이터 활용: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① 영업비밀 등의 무단반출하는 사례, ② 타인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사례, ③ 데이터의 파기 범위가 문제된 사례, ④ 데이터의 손실로 인하여 광고 매출에 손해가 발생한 사례
- 행정소송 및 기타 사례의 쟁점 역시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 유형별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데이터 생산: ① 허위 데이터 생성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례, ② 데이터 변조로 인하여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례
 - 데이터 거래: ① 용역계약에 따른 시제품 납품 미달 및 원본 데이터 제출 위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한 사례, ② 데이터 정확성 기준 미달, 데이터 형식 및 범위 불일치 발생으로 지원금 환수한 사례, ③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계약 종료 이후 고객정보 등의 데이터를 인도 요청한 사례, ④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질의 사례

- 데이터 생산·활용·거래 등의 혼합: ① 연구개발 계약 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성능 평가 미달 및 관련 시험 결과 데이터를 조작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한 사례, ② 용역계약에 따라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충족 및 인증서 제출을 요청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계약 해지 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한 사례
- 이와 같은 판례 분석을 통해, 데이터 활용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데이터 소유권, 활용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유형화하고 정리하고자 하였음
- 아울러, 민사소송·행정소송 및 기타 사례 외에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저작권 분쟁조정, 콘텐츠 분쟁조정 등 유사 영역의 분쟁 사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실무적으로 도출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데이터 생산: ① 사회복지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근무 담당자가 신청인의 결근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명을 거부하자 CCTV 열람을 통해 영상을 확인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한 사례, ② 뉴스기사를 무단복제한 것이 문제되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③ 애니메이션 제작 초기 단계에서 최종 반영된 시나리오의 완성 이전 단계에서 집필에 참여한 신청인이 성명 표시권 침해 주장 사례, 집필계약에서 신청인이 창작한 극본을 방송프로그램에 출품 한다고 정하였으나, ④ 극본 출품행위에 대해 계약 위반 주장 사례
- 데이터 거래: ① 미술작품의 무단 철거가 저작인격권 혹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 ②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의 불완전이행과 관련된 사례
- 데이터 활용: ①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콜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해 동의없이 광고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례, ②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질환정보를 다른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③ 무단으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 사례, ④ 신청인이 대가의 지급없이 음원을 이용하는 것을 협상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별도의 요구 조건 없이 응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사건, ⑤ 개인정보 유출 내역 확인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에 관한 사건,

⑥ 개인정보 유출 내역 확인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에 관한 사건, ⑦ 게임에서 캐릭터가 사라지는 오류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환불요청, ⑧ 아이디/패스워드가 도용되어 본인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플랫폼 계정이 이용제한 된 것에 대해 해제를 요청한 사안, ⑨ 게임 아이템 소실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 사안, ⑩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용역계약에서 작업물의 품질과 관련한 환불요청 사례, ⑪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정기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한 사례, ⑫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수강과 관련하여 잦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수강료의 환불을 요구한 사례, ⑬ VOD 서비스 시청과 관련하여,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상세설명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한 사안

나. 데이터 분쟁조정 사례 확대를 위한 유형화

- 본 연구에서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유사한 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 관련 분쟁의 특성을 유형화하고자 하였음
- 사례 분석 결과, 데이터 분쟁은 다음과 같이 **생산, 거래, 활용 등 세 가지 축으로 분류** 될 수 있었으며, 이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임**
- **생산 관련 분쟁**
 - 원본 데이터 제공 거부: 계약상 제출 의무의 존재 여부 및 영업비밀성과 충돌
 - 허위 데이터 생산: 데이터 왜곡·변조로 인한 계약불이행 또는 연구부정 의심
- **거래 관련 분쟁**
 - 데이터 제공 중단: 계약 기간·조건의 해석, 데이터 사용 불가에 따른 손해 발생
 - 데이터 권한·범위 분쟁: 제3자 이용, 시스템 폐쇄, 권한 확인 의무 등
- **활용 관련 분쟁**
 - 무단 활용 및 영업비밀 침해: 콘텐츠 게시·복제, 무단 재가공 등
 - 데이터 소실 및 파기: 손해배상 기준, 비밀정보 범위의 명확화 필요

- 한편, **행정소송 사례**에서는 데이터의 변조 또는 부정 제출로 인한 참여제한 처분이나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쟁점이 주를 이루며, 이 또한 **위의 생산·거래·활용 유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그러나 「행정소송법」에는 명시적인 조정 규정이 부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지휘 요건 등이 **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즉, 실무상 ‘**사실상 조정**’이라는 방식이 존재하나,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식은 아니므로 행정 분야에서의 분쟁 해결 접근성이 낮은 실정임
 -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조정’이 관행화되어 있으나, 법무부 지휘 요건 등 제도적 한계가 있어 **협조가 요청됨**
- 유사 분쟁조정 사례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통합적 조정기능 강화 필요성**을 검토하였음
 - 개인정보, 저작권,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의 분석을 통해, 데이터가 다양한 법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사례들은 데이터의 생성, 거래, 활용 전반에 걸쳐 권리 충돌이 다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분쟁의 성격이 단일 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복수의 법적 쟁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짐
 - 이에 따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분쟁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시사점

- 데이터 관련 분쟁이 점차 복합화·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데이터산업법상 분쟁조정위원회가 단일 법령에 한정된 조정에서 벗어나 **복수의 법적 성격을 포섭할 수 있는 통합 조정기능을 갖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데이터 분쟁은 법령 적용의 차이와 관계없이 생산, 거래, 활용의 구조적 흐름을 중심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사건의 유형 자체를 기준으로 통합 분류하는 체계가 유의미함
- 행정 분야에서의 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유관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공 데이터를 둘러싼 행정 분쟁의 경우, 「행정소송법」에는 조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의 장은 소송수행 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자율적인 조정 참여에 제한이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향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실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법무부와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조정 참여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정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저작권, 공공데이터 등 각 분야별 개별 법령의 조정 기구와 병존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에서는 이들 권리가 **한 사건 안에서 중첩되어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실에 부합하는 **실효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정 기구 간 연계 또는 통합 기능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분쟁 당사자는 대체로 기술적 내용과 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데이터 분쟁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조정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뿐 아니라 조정 결과의 수용성과 만족도 역시 제고될 수 있음
- 향후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 범위 확대 및 조정 권한의 명확화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분쟁을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 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II. 데이터 분쟁판례 분석

1. 민사판례 분석

가. 데이터 생산 판례

1) 검증 데이터 제공 거부로 인한 준공 거부 및 계약 해지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대법원 2022. 8. 18. 선고 2022다24544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19나7604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533330 판결
- 민법 제150조, 제390조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A대학교 산학협력단
 - 피고 : ○○○
- 사실관계
 - 피고 산하의 연구기관인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는 2015. 2.경 B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특허권을 확보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C 용역' (이하 '이 사건 용역')의 입찰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3. 연구내용

가. 과업의 범위

- 실험결과 및 신제품 제조 관련 특허 1건 이상

나. 과업수행방법(분석항목 및 조사분야)

※ 아래의 분석 및 조사항목은 '연구사업계획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시제품 생산 및 지적재산권 취득

| 연차 | 연구재료 | 개발품 | 연구내용 |
|----|-------------------------|-----------|---|
| 4 | 잣나무 부산물 정제물 그에 따른 제형 | 기능성 세포 앰플 | 각 재료별 40여 가지의 분석 진행 및 원재료 식약청 사용허가 획득, 시제품 개발 |

※ 각 재료별 기능성 ○○○ 재료(시제품) 조성법 및 효능 관련 특허신청

4. 과업 완료 시 제출물

- 식약처 인증 기능성 ○○○ 시제품(이하 '이 사건 시제품'이라 한다) 1,000개(일반○○○일 경우 3,000개)
- 특허 출원 자료(등록증): 1개 이상
- 보고서: 인쇄본 100본(중간 20, 최종 80), USB 파일 1ea
- 제품의 생산경제성 및 시장경제성 분석자료: 보고서 포함
- 활용계획서 1부(보고서에 포함 또는 별지로 제작)
- 정산서: 지출부, 영수증 사본, 자체감사팀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확인서

5. 기대효과

- 특허권 획득으로 ○○○ 소재 관련 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연구소로부터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9절 용역 관련 자료의 제출 등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4. 용역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전문기술의 제공) 계약담당공무원은 감리용역의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다음 과업에 대하여 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특히, 노하우(know-How) 등의 사용료

제24조(저작권 및 소유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완성하였다는 내용의 준공계 및 보고서(이하 '이 사건 최종보고서'), 이 사건 시제품 1,048개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7.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위 준공계를 반려함

△△△△△연구 준공계 반려 및 회계검증 재검토 요청

- 제출된 준공계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내용보안 및 철저한 회계검증과 자체감사 후 조치계획을 기입하여 준공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A대 자체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연구비가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입
 - 나. 그러나 용역계약으로 성과품을 2,000개 제작하였음에도 1,000개만 납품하였음
 - 다. 또한 구입되었다고 명기된 □□□ □□□ kit는 □□□□□□□□□□ □□□□ 1 생합성 측정에 사용되는 시약으로, 본 실험은 계약서에 없는 과업 외 내용이며, 보고서에 관련 실험결과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당 시약 구입 건임.
- 위와 같은 시약 부당 구입 및 예산 유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준공검사 시 분석시험의 데이터 객관성 검증, 시약의 적정 사용 여부 검증 등이 필요하나, 현재 용역 시행사 원고 측에서 착수보고 PPT, 최종보고 PPT 및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분석실험 전체의 원본데이터(law data)(이하 '이 사건 원본데이터'라 한다)가 제출되고 있지 않아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보안각서 위반)이므로 원고는 조속히 이 사건 원본데이터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용역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 향후 위와 같은 사항 재발견 및 보안 통보로 인한 준공검사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쟁점

-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 원본데이터 제출의무의 존부

라) 판결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모두 수행하여, 2015. 12. 17. 피고에 이 사건 최종보고서, 이 사건 시제품 1,048개 등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출물을 모두 제출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제출의무도 아닌 이 사건 **원본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며, **그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위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판결 이유 1(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B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특허권의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664조 소정의 **도급계약**으로서, 그중 이른바 **무형도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 판결 이유 2(이 사건 용역 완성 여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주요 부분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수행하여 이를 완성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완성하였다는 점이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판결 이유 3(원본 데이터 제출 의무)

- 원고의 거절 이유에 따르더라도 **원본데이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위하여 수행한 제반 실험에 사용한 시료의 종류와 양, 실험 수행 방법과 횟수, 각각의 변수에 대입한 수치 및 그 결과와 그에 관한 분석내용 및 근거 등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반 자료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사건 원본데이터에는 **적어도 실험 디자인 방법, 연구 진행 방법 노하우, 결과 분석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용역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2의 가항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용역이 완성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노하우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계약상대자의 노하우에 해당하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규정은 아님

마) 소결(시사점)

- 용역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과업이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어느 정도 목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분쟁은 매우 일반적인 분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사안은 위와 같은 분쟁 외에 ‘원본데이터’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추가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원본데이터는 ① 용역이 적정하게 수행됨으로써 완성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검증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② 다른 한편으로는 용역을 수행한 자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의 성격도 함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본데이터 제출 여부는 분쟁의 여지가 높은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용역계약서나 과업지시서의 경우 ‘원본데이터’를 특정하여 제출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정보’나 ‘데이터(Data)’와 같이 추상적인 용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업 목적 달성 여부에 관한 검증 단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함
- 본 건 역시 (1)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4. 과업 완료 시 제출물’에서는 보고서 등만 규정하고 있고, (2)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제8절에서 용역 완성의 검사에 관하여, 제9절에서 ‘용역 관련 자료의 제출’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원본데이터’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음
- 결국 도급 계약에 관한 일반 법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검사 방법, 원본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원본

데이터는 그 규모나 양이 매우 방대한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원이 원본데이터 중 실제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하나 하나 검토하여 판결문에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원본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분쟁은 크게 ① 제공 의무에 관한 분쟁, ② 제공 범위에 관한 분쟁, ③ 제공 방법에 관한 분쟁으로 나눌 수 있는바, 특히 원본데이터 제공 범위나 방법의 경우 막대한 양의 원본데이터 중 수행자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한 다음 제공 또는 열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제공 범위나 방법에 있어서 양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공 의무에 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원본데이터의 경우 제공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사법부는 그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의 조정을 통한 분쟁조정이 적절한 경우가 많음
- 만약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조정인으로 할 경우, 원본데이터의 분석 등을 위한 사실 조회나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이 사건은 원고가 용역비를 청구하는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본데이터의 일반적인 내용과 성격을 바탕으로 제출 의무가 있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실제 원본데이터 중 검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바, 양 당사자 간에 '제출 범위'에 관하여 또다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조정은 양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관련 쟁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 사건과 같이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한 조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양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이행 방법이나 범위 등 관련 쟁점을 한 번에 해결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2) 허위 데이터 생산·제공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나60509 판결
수원지방법 안양지원 2022. 2. 10. 선고 2020가소138014 판결
- 민법 제390조, 제664조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피고에게 'C △△△△공사 중 교통량 분석'을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
 - 피고 : 용역 수행자
-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말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교통량 분석'을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13. 계약대금 2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
 - 원고는 2020. 7. 23. 피고에게 외부 감사인의 자료 제출요청이 있으니, 용역이행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D에 '○○○○호선 C 교통량 분석'을 22,000,000원에 발주한다는 내용의 발주서와 피고가 D에 22,000,000원을 입금한 자료만을 제공
 - 원고는 피고에게, 2020. 8. 25. 이 사건 계약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20. 9. 7. 재차 이 사건 계약대금에 대한 소명을 2020. 9. 15.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 피고는 2020. 8.경 원고에게 을가 제2호증(준공 전 효과분석, 이하 '이 사건 보고서')을 제출

다) 쟁점

- 데이터 허위 작성 여부

라) 판결

○ 결과

- 원고 전부 승소(제2심 : 피고 항소 기각)

○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보고서는 E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 외 F가 2016. 6. 작성한 보고서를 짜깁기하여 작성한 허위의 보고서로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불완전 이행하였거나,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청구함

○ 판결 이유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한 불완전 이행의 경우, 완전이행(추완)이 가능하다면 이행지체에 준하여, 완전이행(추완)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준하여 계약 해제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채무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제품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계약당사자들의 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추완이 가능한지 여부는 추완을 통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관련 증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보고서는 F 주식회사가 2016. 6.경 작성한 'G사업' 준공 전 효과 분석 보고서와 지도, 교통량 등 수치 등이 일치하는 등 전혀 다른 도로, 시점에 대한 보고서를 지명 등의 기초정보만 변경하여 사실상 그대로 제출한 것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마) 소결(시사점)

- 이 사건은 용역수행자인 피고가 지도와 교통량 등에 관한 허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치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안으로서, 데이터의 허위 생산에 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데이터의 허위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사자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경우나 데이터의 가치나 효용성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분쟁은 사실관계나 책임유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이 적절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사건을 포함하여 데이터의 허위 생산에 관한 분쟁의 양태를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이 전체가 허위 데이터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드물고, 그보다는 허위 데이터가 일부 포함된 경우나 적법한 취득·이용 권한을 갖지 못하는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등이 오히려 다수라고 할 수 있음
- 그러한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법원에 의한 일도양단적 판단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조정을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불완전 이행 여부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원고 입장에서도 주장·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판결보다는 양 당사자 간 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조정 절차를 통해, 우선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정하고, 다음으로 책임의 이행 방법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3)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19가합6381 판결
- 민법 제390조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 : 신재생에너지개발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4. 피고와 D ◇◇발전사업, E ◇◇발전사업, 기타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양해각서를 작성
 - 원고는 2018. 4. 12. 피고와 F 소재 D ◇◇발전단지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415,800,000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원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계약선금 207,900,000원을 지급

제2조(역무의 범위)

① 피고는 본 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역무를 포함하여 원고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계측기 운영 등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역무를 책임 수행한다.

1. ◇◇계측기 운영 및 부대업무
2. ◇◇데이터 취합
3. ◇◇데이터 분석
4. ◇◇데이터 분석보고서(2회/년)

제3조(계약금 지불 등)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 분류 | 금액(원, VAT 포함) | 지급 시기 |
|------|---------------|----------------------|
| 계약선금 | 207,900,000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 중도금 | 166,100,000 | ◇◇계측 착수일 후 10일 이내 |
| 잔금 | 41,800,000 | 1차 분석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 |
| 합계 | 415,800,000 | |

제5조(계약기간 등)

① 피고가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과 ◇◇데이터 2차 분석보고서 납품 중 빠른 날로 한다.

제7조(납품 및 철거)

① 피고는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2회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분석보고서 및 ◇◇계측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제8조(계약변경 및 중지)

원고와 피고는 본 역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본계약을 변경, 추가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중지/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는 2018. 1. 11. 이 사건 원 계약을 ‘◇◇계측기 1기 운영 및 부대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8. 1. 15. 피고에게 20,512,000원을 지급

제2조 원 계약(이 사건 원 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계측기 1기 운영 및 부대업무’로 변경한다.

제3조 원 계약 제3조의 계약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 분류 | 금액(원, VAT 포함) | 지급 시기 |
|------|---------------|----------------------|
| 계약선금 | 207,900,000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 중도금 | 20,512,000 | 변경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 잔금 | 15,408,000 | 최종 분석보고서 납품 후 10일 이내 |
| 계 | 243,820,000 | |

-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7. 10.경 ◇◇계측기 1기의 설치를 완료하고 계측을 시작하였고, 2018. 7. 31.경 원고에게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원고는 2018. 9. 7. 피고에게 2018. 6.경 원고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단지 조성사업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므로, ◇◇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 역시 해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해지 합의서 초안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합의해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 피고는 2019. 5. 3.경 원고에게 ◇◇데이터 최종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음

다) 쟁점

- 용역계약의 불완전 이행 여부

라) 판결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원고 주장 요지

-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C는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신규사업의 개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고 피고에게만 이익이 되는 계약이며, 용역대금도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C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용역대금 241,822,1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원 용역계약과 달리 ◇◇계측기를 1기밖에 설치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인 ◇◇데이터의 수집, 분석업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지 배치 계획수립 및 라이다(Lidar) ◇◇계측을 통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져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인 D ◇◇발전단지의 사업타당성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241,822,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결 이유 1(C의 배임행위로 인한 용역대금 반환 의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C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판결 이유 2(피고의 보고서 작성의무 불완전이행 여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원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측기 2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정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제2 변경계약 체결시 ◇◇계측기 1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용역대금도 415,800,000원에서 243,82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원 용역계약과 달리 ◇◇계측기 1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7. 10.경 ◇◇계측기 1기의 설치를 완료하고 계측을 시작하였고, 2018. 7. 31.경 원고에게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였음. 피고가 제출한 반기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원고 측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
-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의무는 ◇◇계측기 운영 및 부대업무, ◇◇데이터 취합·분석 및 분석보고서 작성이며, 피고가 위 보고서 작성 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피고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계측기 데이터 및 이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장소에서 비교적 낮은 ◇◇이 측정되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지 배치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타당성 판단을 위해 라이다 계측을 통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보고서 작성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계측기의 교정 유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최종보고서는 신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수집한 ◇◇계측기의 데이터가 신뢰성 내지 유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마) 소결(시사점)

- 전문분야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업무에 관한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서 수집 및 분석을 하려는 목적, 대상 데이터의 내용과 범위, 분석 방법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실무상 계약서에 관련 데이터의 내용, 범위, 분석 방법 등을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
- 본 건의 경우 최초 ◇◇계측기 2기 설치에서 1기 설치로 변경되었음이 계약상 명확하기 때문에, ◇◇계측기 1기를 설치한 것 자체가 불완전이행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함
- 문제는 ◇◇계측기 1기를 설치하여 얻은 데이터와 그 분석 결과가 용역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유형의 분쟁의 경우,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를 조정인으로 하여 용역 계약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1기의 계측장비를 설치한 위치 등이 적정했는지, 해당 계측 장비를 통해 얻은 데이터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에 미달하는지, 용역수행자가 확보된 데이터 적정한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는지, 분석 결과가 통상적인 계측 및 분석 업무의 수준에 비추어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양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소송 절차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일도양단적 결론만 가능하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경우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예를 들어 ① 쟁점1에 대해서는 의뢰인 측에서 1기 설치에 대해서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② 쟁점2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원고 측에서 확보한 별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시하고, 피고 측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미 수집된 데이터나 원고가 추가로 제공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부분적인 추가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합의한다면 보다 신속하면서도 양 당사자들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나. 데이터 거래 판례

1) 부당이득금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단27303(본소), 2019가단100261(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127765(본소), 2021나127772(반소) 판결
- 민법 제390조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회사를 위해 ■■상품 판매 및 계약체결 업무를 위탁받아 대리하는 ■■대리점
 - 피고 : 원고의 '○○지점'의 지점장 겸 ■■설계사
- 사실관계(반소 부분을 중심으로)
 - 원고는 2015. 6. 12. 피고와 ○○본부에 관한 지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지점장(○○본부)으로 위촉하여 원고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원고는 이 사건 지점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영업 관련 전산시스템을 2016. 3. 2. 일방적으로 중단 및 폐쇄시킴으로써 피고의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2016. 3. 28.에는 피고 사무실에 있는 각종 집기 및 비품을 강제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사무실을 폐쇄함

다) 쟁점

- △△△△데이터 사용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라) 판결

○ 결과

- 본소 : 본소 청구 일부 인용
- 반소 : 반소 청구 기각

○ 피고(반소원고)의 주장 요지

- 피고는 원고와 지점계약을 체결하면서 1건당 135,000원에 해당하는 △△△△데이터 자료 63건을 2015. 9.부터 2016. 2.까지 합계 8,480,000원을 지급(급여공제)하고 매수하였음
- 원고가 ■■■영업 관련 전산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중단 및 폐쇄하는 업무방해로 인하여 위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음

○ 이유

-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3. 23.자 지점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고 원고에게 반송된 사실, 원고가 2016. 3. 28. 피고 운영의 지점 사무실의 집기를 임의로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피고는 2015. 9.부터 2016. 2.까지 △△△△ 데이터 자료를 내려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상당한 시일 내에 위 자료를 이용하여 ■■■ 모집행위 등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3. 2. 전산시스템을 폐쇄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자료구입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 데이터 자료는 ■■■ 관련 상담을 요청한 시청자의 개인정보에 불과하여 위 자료를 피고가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월 ■■■료 평균 300,000원인 ■■■계약의 체결로 직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의 행위로 인해 △△△△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영업이익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

마) 소결(시사점)

- 일방(정보제공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 권한을 상대방(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은 이를 유상으로 구입한 후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데이터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의 데이터 이용 권한을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중단시키는 경우 양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데이터 사용권에 관한 분쟁, 즉 정보제공자의 데이터 이용 권한 중단의 적법성을 넘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정보수령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인정 여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그 금액 산정 등 복잡한 이슈가 문제됨
- 특히 본 건과 같이,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영업을 영위해야 하는 자의 입장에서, 데이터 이용 권한을 중단하는 것은 자신의 영업에 중대한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분쟁이 불가피함
-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따를 경우 이용 권한 중단의 적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유무만을 다투게 되기 때문에 일방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정보수령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데이터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경우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자가 데이터 이용 권한을 중단시켰던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고 그 범위 내에서 데이터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본 건에서 법원은 △△△△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영업이익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사법적 판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 해당 △△△△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피고의 영업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바, 조정의 경우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피고가 입은 피해를 합리적인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금전적 배상 외에 데이터 사용 기간의 연장 등 제3의 방법을 통해 양자 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지도사용정지 등 청구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12. 선고 2014가합108028 판결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9조, 제125조 제2항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GIS수치지도데이터를 제작하여 자동차 네비게이션 제조회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공급하는 회사
- 피고 :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도서비스를 제공받은 자
- 피고 보조참가인 A: 인터넷 지도 검색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 보조참가인 B: 콘텐츠 제공업체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A와 2년간 도로망 데이터를 제외한 GIS수치지도데이터, 즉 배경 및 검색용 데이터를 지도 ASP사업용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함
- 피고 보조참가인 B는 피고 보조참가인 A와 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 내용의 지도 서비스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위 지도서비스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콘텐츠사용계약을 체결함
- 피고 보조참가인 A는 원고의 GIS수치지도데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영업점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A 사이의 사업제휴계약은 2014. 4. 10.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

다) 쟁점

- 지도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해당 여부
- 지도데이터의 계속 사용 가능 여부

라) 판결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에서 원고의 도로만 데이터 사용을 제외하였고, 이 사건 사업 제휴계약이 종료된 2014. 4. 10. 이후에는 원고의 배경 및 검색용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보조참가인 A는 원고의 GIS수치지도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보조참가인 A가 제공한 원고의 GIS수치지도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 피고는 보조참가인 A가 제공하는 지도서비스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도서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 따라서 원고는 2014. 4. 10. 이후에 해당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 주장 요지

- 원고의 GIS수치지도데이터는 지도의 일종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
- 피고의 영업점찾기 서비스는 해당 웹페이지를 접속하면 보조참가인 A의 컴퓨터 서버에 연결되고 그 콘텐츠에서 영업점을 검색하면 영업점을 위치가 출력되는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작권법이 정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제공한 지도서비스에 원고의 GIS수치지도데이터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보조참가인 A로부터 제공받은 지도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GIS수치지도데이터를 사용한 주체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지 피고가 아님

○ 이유

-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GIS수치지도데이터는 배경 데이터, 검색용 데이터, 도로망 데이터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
-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 77405 판결 등)
- 피고의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웹페이지를 클릭하면 피고의 서버에서 해당 화면이 출력되고 지도검색 등 서비스가 제공되며, 피고는 보조참가인 A가 제공한 지도 서비스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보조참가인 B에게 제공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영업점찾기 서비스 제공행위는 단순히 보조참가인 A의 지도 서비스 웹페이지 위치 정보 및 경로를 나타내는 인터넷 링크 방식 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터넷 링크 방식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침해행위가 아니 라고 할 수는 없음
- 그러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보조참가인 B와 지도서비스제공계약에 기하여 보조참가인 A가 제작·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의 GIS수치지도데이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설령 보조참가인 A의 지도서비스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 참가인 A는 원고의 GIS수치지도데이터를 가지고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보조 참가인 B와 콘텐츠 사용계약에 따라 보조참가인 A가 제공하는 위 지도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보조참가인들이 지도서비스 제작의 자료가 된 GIS수치지도 데이터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마) 소결(시사점)

- 데이터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함
- 본 건과 같이,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와 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제1차 계약)을 맺은 자가 다시 제3자와 해당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1차 계약이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최종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이용자로서는 적법한 제2차 계약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사용하는 중 제1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될 것이고, 저작권자로서는 제1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제3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사법적 판단에 따른다면 손해배상의 유무라는 일도양단적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 일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 원고로서는 자신의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상황으로서, 보조참가인들보다는 피고와 직접 데이터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로서는 비록 지난 기간의 이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겠으나 해당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양 당사자의 양보를 통해 피고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와 향후 해당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면 양측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데이터 활용 판례

1) 데이터 목적외 활용, 부정경쟁행위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204893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가합27697 판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제2항, 제41조 제1항,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 제5조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A : 쇼핑몰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
 - 원고 B : 원고A 회사의 대표이사
 - 피고 C : 피고 C가 설립한 회사
 - 피고 D~G : 원고 회사 또는 H협동조합에 재직했던 사람
- 사실관계
 - 원고들 등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 사무용품 등 일체의 판매 유통 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 H협동조합을 설립
 - 피고 E, G, F는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및 확인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

-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던 J은 원고 회사가 그 동안 공공기관의 구매실무자 등으로부터 받아온 견적의뢰서 등이 포함된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을 피고 E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 E는 이 사건 각 파일을 피고 E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
- 원고들은 “피고 E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D와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견적의뢰서에 포함된 매출정보를 피고 E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고 C 대표이사인 피고 D에게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E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의 혐의로 고소 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은 피고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음

-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J는 피고 E가 H에서 근무 시 원고 B의 지시에 의해 H 홍보를 위해 원고 회사에서 받은 견적사항을 피고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는 피고 E의 진술과 일치한다.

- 피고 E가 자신의 메일로 보낸 정보는 견적의뢰에 필요한 업체정보, I 노출 단가 등으로 실제 원고 회사에서 납품하거나 발주된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E가 이메일로 전송한 견적의뢰 한 업체명, 담당자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정보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현황,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

- 이 사건 각 파일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라) 판결

- 결과
 - 1심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2심 :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

○ 원고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각 파일에는 ① 공공기관 구매실무자의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물품 수요현황에 대한 정보, ② 원고 회사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격 및 원고 회사가 위 물품을 매입하는 단가에 대한 정보 등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파일은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피고 E는 접근권한 없이 부정한 수단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을 취득하여 사용하였고, 설령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을 사용하거나 피고 C에게 제공하였는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 이유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함(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 구매실무자의 인적사항 정보, 물품수요 정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데이터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비로소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
- 이 사건 납품가격 및 매입단가정보 등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참고에서 보호하는 성과라고 보기 어려움

마) 소결(시사점)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① 공공기관 구매실무자의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물품수요 현황에 대한 정보, ② 원고 회사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격 및 원고 회사가 위 물품을 매입하는 단가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파일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 ‘데이터’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는데, 일단 이 사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동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됨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동 법률은 2021. 10. 19. 제정되어 2022. 4. 20.부터 시행된 반면, 이 사건 메일을 보낸 행위는 2018. 3. 29경, 2018. 4. 20.경이기 때문에 동 법률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 ※ 제1심 판결문에서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과 관련하여, 피고 D가 개인 메일로 이메일을 전송한 날은 2018. 4. 20.인데 데이터 부정사용 등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비로소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①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 자산’)는 보호되어야 하고(제12조 제1항),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조 제2항),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42조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행위를 데이터의 무단 취득·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가 아니라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시점이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 설령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동법 역시 이 사건 메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후에 제정·시행되었기 때문에 역시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음
- 본 건은 데이터 분쟁의 기초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데이터 분쟁에 관한 조정 시 적용 법령의 결정에 참고할 가치가 있음

2) 데이터 무단 활용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부산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31494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나50929 판결
-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제5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에서 □□□□□ 예측자료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
- 피고: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건 예측자료를 무단으로 게시한 사람

○ 사실관계

- 원고는 ◇◇◇◇에서 'C'라는 이름으로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유튜브에서는 'D'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위 ◇◇◇◇ 개인방송 및 ○○○ 채널을 통하여 자신이 제작한 □□□□□ 예측자료(이하 '이 사건 예측자료')를 판매
- 피고는 2022. 12.말경부터 2023. 4.경까지 인터넷 게시판 AL에 '원고의 □□□□□ 예측이 모두 틀렸다, 원고는 사기를 치는 수준이다, △△△ 먹는 사기꾼이다'는 취지로 원고를 비방, 모욕하는 글을 작성·게시하고, 2023. 1. 14.경부터 2023. 5. 20.경까지 인터넷 게시판 H 및 위 AL에 이 사건 예측자료를 무단으로 게시하였고, 2023. 11. 29. 위 나.항과 같은 행위로 원고의 이 사건 예측자료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23고약7156호)을 받아 확정

다) 쟁점

-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라) 판결

○ 결과

- 제1심 : 원고 청구 일부 인용(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제2심 : 원고의 항소 일부 인용

○ 원고 주장 요지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무단게시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제2항 위반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

○ 이유

- 민법 제750조의 요건 중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으로,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참조)
- 원고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수집하고 그 경기내용, 승패의 추세, 팀별 경기력 등을 분석하여 이 사건 예측자료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위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예측자료 제공, 판매를 통하여 피고의 이 사건 무단게시행위 등 직전인 2022년 한 해 동안 700,0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예측자료 판매 영업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함**
-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 작성·게시, 이 사건 무단게시행위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예측자료 판매 영업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다만, 경기변동 등 다른 외부적 요인이 원고의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예측자료의 내용, 이 사건 예측자료 판매를 통한 원고 수입의 발생 구조, 이 사건 무단게시행위 등의 내용과 기간,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음

마) 소결(시사점)

- 원고는 소장에서 자신의 이 사건 예측자료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 ‘데이터’(제2조 제1호)로서, 피고의 이 사건 예측자료 무단 게시 행위는 동법 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동법 제42조 제1항의 손해배상 규정, 같은 조 제2항의 손해액 인정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이 사건 데이터와 같은 스포츠 경기 예측 자료와 관련된 해외 기업의 연수익이 약 7,500억에 이르는 등 관련 시장 규모가 크다는 주장 및 자료를 제출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예측자료가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 ‘데이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원고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제2심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일부 인용을 하였고,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음

- 이 사건 예측자료와 같이 명확한 시가가 없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 실제로 원고는 2억 2,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는 1,500만원만 인용되었으나, 2심에서는 137,710,629원이 인용되었음

- 본 사건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예측자료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고, 사실상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만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조정절차를 통해 양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양측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실제로 본 사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예측자료 판매 영업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존 매출액이 있고 피고의 행위 이후에 줄어든 매출액이 있지만, 그 감소액이 모두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판결문에 실시된 바와 같이 경기변동 등 다른 외부적 요인이 원고의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음. 그렇다면 조정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의 상호 양보하에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원만한 분쟁 해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실무상으로도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제2항과 같은 손해배상 인정 조항이나 손해배상 추정 조항 등이 있더라도, 재판부에서 가능한 당사자 간 합의를 촉구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바, 데이터분쟁조정 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조정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3) 영업비밀 부정취득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합209963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5조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E대학교 ◎◎◎◎◎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18년경 해임될 때까지 E대학교 ◎◎◎◎◎ ◎◎◎◎◎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E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2014. 7. 1. E대학교 F센터에서 ‘G’이라는 상호로 교원 신규창업을 하였음
 - 피고 B : 2009년경부터 원고의 E대학교 학부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경부터 피고 C의 I대학교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
 - 피고 C : 2018.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H에 있는 I대학교 △△△△ △△△ 교수로 재직인 사람

○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 ○○○○○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18년경 해임될 때까지 E대학교 ○○○○○ ○○○○○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원고는 E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2014. 7. 1. E대학교 F센터에서 'G'이라는 상호로 교원 신규창업을 하였음
- 피고 B는 2009년경부터 원고의 E대학교 학부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졸업한 후 E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하였고, 박사과정 졸업 이후에도 원고의 연구실에 남아 계속 근무하였음
- 피고 C는 2018.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H에 있는 I대학교 △△△△ △△△ 교수로 재직하였음
- 피고 B는 2017. 10. 25. 원고의 연구실에서 퇴사하면서 연구실 내 4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을 외부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하여 들고 나옴(이하 '이 사건 반출행위')
- 원고는 이 사건 반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를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21. 6. 18.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28.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

다) 쟁점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 채무불이행 여부

라) 판결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원고 및 피고 주장 요지

- 원고는 피고 B가 2017. 10. 25. 이 사건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원고와의 비밀 준수 및 유출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였다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G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연구비 과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3,020,214,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정보들을 이용하여 얻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위 연구비 상당의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자료들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논문과 이 사건 연구비 과제에는 이 사건 자료들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자료들의 귀속 주체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지 원고가 아니며, 원고가 운영하는 G의 매출은 ◇◇◇과 ◆◆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자료들과 무관하고, 피고 B가 원고 연구실 내 4번 컴퓨터에서 이 사건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여 가지고 간 것은 원고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등 위반이라거나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이 아니고, 이 사건 자료들은 산업기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 판결 이유 1(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경제적 유용성)를 말하는데,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다가 2015. 1. 28.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2019. 1. 8. “비밀로 관리된”으로 각 개정되었음

-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료들에 대하여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한 바가 전혀 없고, 비밀관리를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안관리 규정을 둔 바가 없으며, 원고는 연구실 공용서버로 4번 컴퓨터를 지정하여 연구원들의 모든 데이터를 4번 컴퓨터 공유폴더를 통해 편집하는 등 이 사건 자료들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적시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는 연구실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동안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4번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개인적 파일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복사하였을 뿐 실험 방법이나 데이터를 선별하여 복사하지 않았으며, 복사한 파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② 연구실에 별도의 공용서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가 연구실을 퇴실하면서 4번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을 복사하지 않을 경우 파일이 삭제될 우려가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연구실 밖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실험결과를 정리한 파일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라고 자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원들이 외부저장매체를 통해 실험 관련 파일들을 옮겨 어디서든 실험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상태로 있어야 했으며, 원고도 연구원들이 외부저장매체를 통해 실험 관련 파일 등을 외부로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자료들에 대한 비밀관리성 또는 피고의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실험 프로토콜 및 이 사건 연구노트 내용이 일부 포함된 이 사건 컴퓨터 파일을 복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 판결 이유 2(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여부)

- 이 사건 자료들은 ◆◆◆◆ 분리, 산화 및 당화 유도, 산화 및 당화로 인한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이므로, ◆◆◆◆에 한 개 이상의 다른 ◆◆◆◆의 유전자를 연결시킨 후 발현시키는 기술인 ◆◆◆◆ 융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자료들이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마) 소결(시사점)

- 본 건은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외부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하여 나왔고, 그 이후 피고 C의 연구실에서 근무하게 되자 원고가 영업비밀 유출 등을 문제삼으며 분쟁이 발생한 것임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데이터는 초원심분리를 이용한 저밀도 ◆◆◆◆, 고밀도 ◆◆◆◆ 분리 방법, 저밀도 ◆◆◆◆, 고밀도 ◆◆◆◆의 조성 분석 및 특성 규명 방법, 저밀도 ◆◆◆◆, 고밀도 ◆◆◆◆의 당화 유도 및 규명 방법에 관한 실험 프로토콜 등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있음
- 이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가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가 공지되었는지 여부나 해당 데이터가 다른 연구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들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임
- 따라서 양 당사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하는 데이터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을 신속하게 파악한 다음,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지를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연구나 사업에 해당 데이터가 사용되었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쟁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 중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일반 데이터를 양자의 동의하에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임

4)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8.자 2019카합21947 결정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305조 제1항

나) 개요

○ 당사자

- 채권자 : 2015. 5.경부터 국내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 스코어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C’라는 명칭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채권자 애플리케이션’) 및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채무자: 2019. 1.경부터 채권자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D’라는 명칭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제1 채무자 애플리케이션’) 및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 관제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선행 가처분 결정 후인 2019. 9. 27.부터 제1 채무자 애플리케이션을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하 ‘제2 채무자 애플리케이션’)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 사실관계

- 채권자는 2015. 5.경부터 국내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 스코어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C’라는 명칭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채권자 애플리케이션’) 및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채무자는 2019. 1.경부터 채권자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1 채무자 애플리케이션 및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 채권자는 2019. 5. 9. 채무자가 채권자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 관련 데이터 베이스(이하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추출하여 이를 기초로 제1 채무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다음 이를 복제, 전송함으로써 채권자의 이 사건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였고,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 채무자 애플리케이션의 복제, 전송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선행가처분 결정')을 받음
- 그런데 채무자는 선행 가처분 결정 후인 2019. 9. 27.부터 제1 채무자 애플리케이션을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다) 쟁점

- 제2 채무자 어플리케이션의 복제 등 금지신청
- △△△ 관련 정보의 복제 등 금지 신청
-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라) 판결

- 결과
 - 1. 채무자는 별지1 기재 및 표시 애플리케이션을 복제, 전송, 배포,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 (같은 날 복수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위반일수 1일로 본다)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장 요지

- 채권자: 채무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무단 복제한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 중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만을 일부 삭제, 수정하여 제2 채무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이를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바, 제2 채무자 애플리케이션은 채권자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그대로 베껴 구현한 것으로, 제2 채무자 애플리케이션의 복제, 전송 등의 행위는 채권자의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채권자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함.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복제 등을 지속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채권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것임
- 채무자: 채무자는 채권자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추출·복제한 사실이 없고,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정보들은 제2 채무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미 삭제되었으며, 제2 채무자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 관련 정보는 채무자가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수집한 것이므로, 제2 채무자 어플리케이션에 여전히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음

○ 이유 1(복제 등 금지신청)

-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0호에서 정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에 있음이 소명됨
- 한편, 저작권법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독자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취지는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수집, 선택, 배열, 구성하는 데 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시간과 노력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제2 채무자 어플리케이션을 복제, 전송하는 등의 행위가 채권자의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과 노력,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와 제2 채무자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정보의 유사성 및 그 정도, 채무자가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수정, 보완, 갱신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그 중요성, 그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2 채무자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 관련 정보는 제1 채무자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와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제2 채무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 관련 정보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업구조 등에 비추어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 △△△ △, △, △△△, △△ 등의 정보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는 오기나 특징적 기재사항 등이 제2 채무자 어플리케이션의 정보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 △△△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정보와는 다르면서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와는 일치하는 정보들 역시 다수 발견되는 등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가 제2 채무자 어플리케이션을 복제,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채권자의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이유 2(△△△ 관련 정보의 복제 등 금지 신청)

- 이 부분 신청은 채권자가 보유한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여 그 복제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일부 정보 그 자체의 복제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거나 채무자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으로 새롭게 취득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와 일치하는 이상 그 사용까지 금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채권자의 권리 범위나 신청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게 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이유 3(간접강제)

- 채무자는 선행 가처분 결정 후 불과 10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일부 데이터베이스만을 수정하여 다시 제2 채무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점, 그 밖에 분쟁발생 후 채무자가 보여 온 태도, 사건 전체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바, 간접강제로써 위 가처분 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소명됨

마) 소결(시사점)

- 본 건은 선행 가처분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제1 채무자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고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임
- 우선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선행 가처분 결정을 통해 정리가 되었고, 본 건에서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주요 쟁점 사항 및 사실관계는 선행 가처분 사건을 통해 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에서는 제1 채무자 애플리케이션과 제2 채무자 애플리케이션의 상이한 점이나 채무자가 별도로 확보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는 상황임
- 이처럼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미 선행 사건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황으로서, 채무자가 제1 채무자 애플리케이션 대비 제2 채무자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상이점과 그동안 자신이 투입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이 있는 사안의 경우라면, △△ 산업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양 측이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간 상이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면 보다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조정은 재판 절차에 비해 최종 결론을 정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있는바, 본 건 결정과 같이 해당 애플리케이션 전체의 복제 전송, 배포,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일도양단적 결정이 아니라, 조정인의 조정하에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데이터의 파기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5110653 판결
- 민법 제390조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웹과 앱의 개발을 의뢰한 의뢰인
 - 피고 : 원고로부터 웹과 앱의 개발을 의뢰받은 개발자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웹&앱’ 개발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함

| |
|---|
| <p>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p> <p>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을”이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 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p> <p>2.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 되는 모든 노하우, 설계, 데이터, 공식,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p> <p>제5조 (자료의 반환)</p> <p>1. “을”은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서류,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2.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p> <p>제8조 (손해배상, 위약벌)</p> <p>2.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웹&앱” 계약서) 에 명시된 11,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p> |
|---|

- 원고와 피고는 ‘웹&앱’ 개발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웹&앱’에 필요한 모든 기반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11. 30. 이후 진행하는 모든 계약에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을 작성
- 원고는 2019. 3. 17. 04:52경 고객사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9. 3. 18. 11:08경에도 고객사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음
- 원고는 2019. 3. 18. 피고와 아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하였음

| | | |
|------------|--|----------|
| 2019-03-18 | (20:54) (원고 → 피고) 앱 개발 완료하시고 더미 테스트를 지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수끝나고 한번에 지우셔도 되긴 합니다) (20:55) (피고 → 원고) 검수 확인서 작성되면 지우겠습니다. | 갑 제 22호증 |
|------------|--|----------|

- 피고는 2019. 3. 19. 13:08경 원고에게 피고의 서버를 해킹한 해커로부터 전송받은 영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해킹 사고 사실을 알리고, 당일 19:18경 서울금천경찰서에 해킹 사고에 대하여 사이버 범죄신고를 함

다) 쟁점

- 비밀정보 반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벌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라) 판결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원고 주장 요지

- (위약벌 손해) 피고가 해킹 사고를 이유로 비밀유지계약서 상의 비밀정보, 즉 원고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정보와 ‘E’ 프로그램의 테스트 과정에서 원고의 고객사들이 입력한 정보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2018. 10. 22.자 비밀유지계약서상의 위약벌 11,300,000원, 2018. 11. 30.자 비밀유지계약서상의 위약벌 22,575,000원을 청구함
- (위자료 손해) 피고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평판이 나빠지는 등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함

○ 이유

- 앞서 본 비밀유지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는 “피고가 개별계약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원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일체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의 예시로 “노하우, 설계, 데이터, 공식,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가 기재되어 있음
- 비밀정보는 피고가 웹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원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만을 의미할 뿐, 이 사건 개별계약의 완료 이후 프로그램 구동 등을 위하여 고객사가 입력한 정보는 해당하지 않음
- 비밀정보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피고가 이를 반환하거나 피고가 직접 폐기하고 폐기 증명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는데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E’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할 경우 피고가 비밀정보를 삭제하기로 하였는바, 피고가 해킹 사고를 당하여 실제 비밀정보를 삭제하지 못하였고, 비용 문제로 복구가 진행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비밀정보 반환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마) 소결(시사점)

-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에서는 ‘비밀정보’(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를 규정하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또는 파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만을 의미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만든 정보나 이를 기초로 새롭게 만든 정보까지는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3자가 입력한 정보 등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정보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임
- 용역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상 ‘비밀정보’의 범위나 반환 또는 파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동 계약서상 ‘비밀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쟁점은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 등의 조정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쟁점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임

6) 데이터의 손실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1가합592311 판결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민법 제580조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A(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하여 인터넷 경매 및 상품 중개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IDC(‘Internet Data Center’)와 ◎◎IDC에 D사이트 등 오픈마켓 서버를 두고 있음)
- 피고 : 주식회사 B(△△△△에 있는 E사의 완전자회사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E본사가 제조한 제품의 판촉활동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주식회사 C(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통신장치 및 관련기기 제조 및 판매업, 시스템 통합 및 관리사업, 이와 관련된 도소매, 수출입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 11. 피고 C와 E본사가 제조한 G제품 중 I제품 4대를 473,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시스템(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피고 C는 E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2018. 3. 5.경 원고의 ◎◎IDC에 있는 D사이트 및 J사이트 서버에 설치함
- 피고 C는 원고와 시스템(장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IDC에 설치한 제품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IDC에 설치한 제품에 대하여 제품 설치 시부터 2021. 12. 31.까지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C는 2017. 9. ○○IDC에 설치한 제품의 운영체제를 6회에 걸쳐 상위 버전의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함
- 원고는 ◎◎IDC와 ○○IDC의 D사이트 서버에 설치된 이 사건 제품의SYN-Protection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2021. 5. 10.부터 2021. 5. 18.까지 대규모할인 행사인 ‘K’ 상반기 이벤트를 D사이트에서 진행하였는데, 2021. 5. 13. 오후 D사이트의 방문자수, 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도 그에 비해 클릭당 광고료가 산정되는 CPC 광고 매출이 예상에 못 미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접속자가 광고를 클릭하여도 광고클릭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을 확인함

- 이후 원고는 광고클릭 데이터의 유실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다가, 2021. 5. 17.19:00 일반 통신 프로토콜(HTTP)에서 보안 통신 프로토콜(HTTPS)로 데이터 통신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광고클릭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원고는 2021. 6. 23. 피고 C와 함께 광고클릭 데이터 유실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상황 재현 테스트를 하였고, 광고클릭 데이터를 추적하여 분석을 위한 로그를 피고B에 전달함
- 피고 B는 2021. 6. 25. 원고에게 “B에서 D사이트와 동일하게 재현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광고클릭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bytes를 초과하는 경우, 이 사건 제품이 SYN-Protection 기능 중 Web Cookie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클릭(요청)한 URL 주소(Location)를 슬래시(/)로 처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되돌려주는 증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왜 길이 제한이 생기는지는 본사에서 답변을 받아 봐야 할 것 같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 이후 피고 C는 2021. 7. 피고 B로부터 SYN-Protection 분석보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2021. 7. 29.경 원고에게 전달함
- 이 보고서는 E본사가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피고 B가 작성한 보고서인데, 이 사건 제품의 SYN-Protection 기능(Web Cookie 기능)이 가동되면, MTU1,500(하나의 패킷에 담기는 데이터의 최대전송단위, Maximum Transmission Unit)에 따라 하나의 패킷에 실제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1,460bytes), 302 리디렉션 패킷 전송 시 생성되는 추가 정보의 데이터 등을 제외하고 남은 ‘허용 가능한 URL 데이터’ 길이는 1,236bytes가 되므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수령한 URL의 길이가 위 1,236bytes를 초과하는 경우, 302 리디렉션패킷 전송 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Location 값을 슬래시(/)로 처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함으로써 광고클릭 데이터 유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원고는 2021. 10. 5.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공급한 G 장비는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SYN-Protection 기능을 동작함에 있어서 특정 URL(1,236bytes 초과)을 처리하지 못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당사는 피고들이 공급한 장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2021. 5. 10.부터 2021. 5. 17.까지의 기간 동안 CPC 광고클릭 데이터가

누락됨에 따라 광고수수료 상실 손해만 1,600,000,000원 상당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이후 장비의 주요 기능인 SYN-Protection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장비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광고수수료 상실 손해와 장비대금을 합한 금액을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

다) 쟁점

- 제조물 책임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하자담보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라) 판결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원고 주장 요지
 - (제조물 책임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해 광고클릭 데이터를 손실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하자담보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였는데 데이터의 일부를 손실하여 손해를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판결 이유
 - (제조물 책임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설계상 결함 또는 안전성 결여 여부) 이 사건 제품에 URL 길이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이 사건 제품이 국제 표준 통신 규약인 MTU1,500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 (표시상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이나 E본사가 사전에 원고에게 데이터 URL의 길이가 1,236bytes를 초과하는 경우 광고클릭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음을 설명하거나 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E본사는 MTU1,500 기준에 따라 URL 길이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같이 대규모 인터넷사이트, 서버 등을 운영하면서 Anti-DDoos 보안장비를 구매·사용하는 **업체의 보안업무 담당자라면, MTU1,500을 기준으로 URL 데이터를 1,200bytes 정도의 일정 bytes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URL 데이터를 일정 bytes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광고클릭 데이터 등이 유실되는 문제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던 점**, ②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URL이 500bytes를 초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서, 피고 C에 사용자가 그 2배가 넘는 1,200bytes를 초과하여 URL을 설정할 것까지 예측하여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E본사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URL 길이 제한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원고와 같이 긴 URL 길이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③ 2017. 9. ⓒIDC 제품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 C는 2017. 9. 6. 원고 측 보안업무 담당자인 T에게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Web Cookie 기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때 첨부된 도식에 의하더라도 해당 기능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쿠키 값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데이터 URL의 길이가 1,236bytes를 초과하는 경우 광고클릭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음을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하지 않은 것이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 (하자담보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품의 Web Cookie 기능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광고클릭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bytes를 초과하는 경우, 광고클릭 데이터가 원고의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하자에 해당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bytes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품의 URL 길이 제한은 표준 통신 규약인 MTU1,500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마) 소결(시사점)

- 이 사건은 원고가 IDC에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디도스 공격 방어 보안 장비를 도입하여 설치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유지보수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C는 유지보수 기간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였는데 이후 광고클릭 데이터의 손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광고 매출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의 제조물책임과 하자담보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서 데이터의 손실에 관한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이 사건과 같이 데이터의 손실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은 IDC 이용 및 광고클릭 매출의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데이터 손실의 책임 여부를 제조물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 등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법적용보다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부터 단순히 시스템 기능 중심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이 아닌 데이터에 관한 부분이 계약의 내용으로 추가된다면 데이터 손실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데이터 분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행정판례 분석

가. 데이터 생산 판례

1) 데이터 허위 생성으로 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서울행정법원 2022. 9. 15. 선고 2021구합80872 판결
- 구. △△△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연구수행자(B대학교 C학과 조교수)
- 피고 : ◇◇◇장관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인 'D' 과제를 수행하였고 2018. 5. 16. "E(F, 2018)"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논문은 이 사건 과제의 성과로 등록하였음
- 2020. 3. 17.경 원고가 논문의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위조하였다는 등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 신고가 B대학교에 접수되었고 B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 등에 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조사를 실시함
-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오차범위 데이터들은 엑셀처리 과정에서 퍼센트 부분의 소수점 표시가 잘못되어 1/100 작은 수치가 표시된 것이고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 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논문의 해당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의 데이터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도, 오차범위 수치가 100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사실의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연구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2021. 4. 8. 원고에게 제재처분 사전통지(참여 제한 3년, 연구비 환수 3,500,000원)를 하였고, 원고는 2021. 4. 28. 재검토 요청을 하면서 2021. 1. 25.경 있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표준편차의 오류 등 경미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이 사건 논문에는 위조나 변조가 아니라 오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조라는 연구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재 사유에 관하여 데이터 허위 작성(위조)에 해당하는 연구윤리 부정은 인정되나, 원고가 데이터를 허위 작성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 입력 실수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참여제한 1년 및 연구비 환수 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는 2021. 10.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연구부정행위(위조): 연구책임자 연구부정행위(위조)에 대하여 이 사건 위원회 결과 연구윤리 부정으로 판정’으로 하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처분 내용을 참여제한 1년으로 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다) 쟁점

○ 데이터 허위 작성 여부

- 논문 내 오차범위 데이터가 고의적 허위 작성(위조)인지 단순 실수인지 여부

○ 제재 처분의 적법성

- 1년간 참여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라) 판결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판결 이유

- (데이터 허위 작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오차범위를 기재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나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 (제재 처분의 적법성)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 3. 19. 대통령령 제2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의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적합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유는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3년 및 환수금 3,500,000원의 처분을 참여제한 1년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 기준(3년 → 1년 경감)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마) 소결(시사점)

- 이 사건은 허위데이터 작성으로 인한 연구부정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 구. △△△법 제11조의2 및 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최대 3년 이내 참여 제한이 가능하고 이 규정을 이어받고 있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제32조에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본 사안에서는 처분 과정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를 거쳐 당초 참여제한 3년에서 참여제한 1년으로 감경함으로써 일종의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강화하여 연구자와 행정기관 간에 분쟁을 중립적인 전문가 패널이 개입하여 사실관계 검증과 해결책 협의를 지원하도록 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임
- 법률의 위반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데이터의 진실성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로서 소송을 거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분쟁이 장기화되면 연구성과나 데이터의 가치도 훼손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잘못된 데이터의 공표로 인해 다른 연구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분쟁의 초기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며 데이터 '생성'단계에서 '데이터 윤리' 또는 '데이터 정확성·신뢰성' 등을 추가하여 데이터 분쟁조정 분야를 더 세분화하여 유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생성-거래-활용분류체계에 더해 데이터 품질 및 무결성 관련 분쟁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데이터의 생성의 윤리적 문제와 정확성·신뢰성에 관한 분쟁 및 허위 데이터로 인한 피해 등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분쟁조정 유형 분류가 필요함

2) 데이터 생성 단계의 신뢰성(사업참여제한처분 취소)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1092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102719 판결
- 학술진흥법 제7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A(C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피고 : ■■■■■■■■

○ 사실관계

- 교육부장관은 2013. 5. 16.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C대학교 총장은 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로 G 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13. 6. 18. ‘사업유형: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사업분야: 과학기술응용, 신청분야:의·치의·한의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참여 사업단으로 선정됨
- C대학교와 피고는 2013. 10. 10.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C대학교와 피고는 2018년까지 매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에 따라 총 사업 기간은 2013.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갱신됨), 2014. 4.경 협약당사자로 C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추가한 것 외에는 2013년 체결한 협약과 주요 내용이 동일함
- 원고는 2016. 8. 9. 교신저자로서 이 사건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는 2018. 4.경 이 사건 논문에 중복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부정행위(변조)가 존재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2018. 4. 3.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C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진실성위원회’라 한다)에 조사를 요청함
-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변조) 여부에 관해 2018. 4. 17. 예비조사를, 2018. 5. 1. 본조사를 각 실시하여 2018. 9. 4. “이 사건 논문에 나타나는 데이터의 중복이 연구윤리규정 제27조의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하였으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의신청 이유 없음’ 결정을 하였고, C대학교는 2018. 11. 20. 피고와 교육부에 위와 같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함

- 교육부 장관은 2019. 1. 4. 이 사건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제13차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단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원고에 대하여 3년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내용을 2019. 3. 11. C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학처 직원을 통하여 통지받음

다) 쟁점

- 행정처분 여부(주위적 청구)
- 의사표시의 무효 여부(예비적 청구)

라) 판결

○ 결과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

○ 판결 이유

- (행정처분 여부) 피고는 준정부기관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인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통지는 행정처분과 같은 형식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행정처분으로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피고가 C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권력 발동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협약과 내부규정인 이 사건 훈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뜻의 계약관계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함
- (의사표시의 무효 여부) 이 사건 논문에는 ‘변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있었고, 원고는 위 연구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절차적인 위법을 저질렀거나, 불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공법상 계약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취지 참조)한데 이 사건 의사표시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원고의 연구부정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무효라고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의사표시는 오로지 이 사건 사업에 한하여 참여제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C대학교가 수행하는 다른 사업이나, 피고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에서 원고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또한 이 사건 의사표시로 인하여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 관련 사항이 통보되거나 등록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사업 외에는 원고의 연구수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근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통지로 인해 이 사건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것 이외에 원고에게 다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마) 소결(시사점)

- 이 사건은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고 관련 근거 등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함
- 이 사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사업 총괄관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여부 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처벌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처럼 피고가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 또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통지가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행정처분으로 보기에 부족하여 결국 원고 및 피고 모두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행정적 손해만 가중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이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 사건처럼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사업 내에서의 참여제한 등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분쟁조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분쟁에 따른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 사건은 데이터와 관련한 행정 판례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으로서 연구 윤리 부분과 연구데이터의 정합성 등 데이터 측면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바, 연구 윤리와 데이터를 하나의 선상에서 검토하기보다는 차등을 두어 연구 윤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정합성 등에 대한 조정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도 있음

나. 데이터 거래 판례

1) 원본데이터 제출 의무 위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제한사항 게재처분 취소)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구합61421 판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대학교 산학협력단
- 피고 : ◇◇◇◇◇

○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경 피고 산하의 연구기관인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가 지역소득개발연구 사업으로 공고한 B를 이용한 기능성 미용제품 개발 및 산업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됨으로써 2015. 3. 2. 이 사건 연구소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용역계약(계약기간: 2015. 3. 2.부터 2015. 12. 16.까지,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

- 원고는 A대학교 △△△△대학 △△△학부의 C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여, 2015. 3. 30. 이 사건 연구소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이행에 착수함
- 원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연구소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준공계 및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5. 12. 17. 원고가 제출한 위 준공계를 반려함
- 사유는 첫째, A대 자체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연구비가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하였으나, 용역계약으로 성과품을 2,000개 제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0개만 납품하였고 둘째, 구입되었다고 명기된 ○○○ ○○○ kit는 본 계약 과업 외의 실험을 위해 필요한 시약으로 보고서에 관련 실험결과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당 시약 구입 건임
-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가 요구하는 원본데이터 등은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7. 2. 8. 비로소 이 사건 연구소에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시제품 중 장기저장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사용한 시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시제품 647개와 원본데이터(전자파일)를 제출함
- 이 사건 연구소는 원고가 2015. 12. 17.자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2. 23. 다시 원고에게 준공계를 반려함
- 피고는 2017. 10.경 원고에게 ‘계약서 조건 위반’을 이유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면서, 청문절차를 실시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7. 10. 31. 청문기일에 출석함
- 청문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로써 계약 위반내용은 첫째, 원고는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시 분석실험의 데이터 객관적 검증을 위한 최종보고 PPT 및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분석 실험 전체의 원본데이터를 미제출하고 이후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함으로써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위반 둘째, 원고는 발주처의 지속적인 요구로 1년 2개월가량 지난 2017. 2. 8.자로 원본데이터를 제출하였으나 2015. 12. 17.자로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5개 실험 부분이 상이한 원본데이터를 제출하여 용역계약 일반 조건을 위반 셋째, 원고는 발주처의 준공 보완요구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보완자료 제출에도 1년 2개월을 지연 제출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 잔금 전액을 요구함 넷째, 원고는 연구결과 제출한 ‘파인어스 앰플’을 연구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 제작레시피’와 다른 임의의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함

다) 쟁점

- 원본데이터 제출 의무 위반 여부
- 보고서와 납품 시제품의 불일치
- 절차상 하자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라) 판결

- 결과
 - 원본데이터 미제출은 처분 사유로 적법하나, 보고서-시제품 불일치 관련 처분은 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취소
- 판결 이유
 - (원본데이터 제출 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연구소는 특허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허 출원 시 관련 원본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원고가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연구소의 담당직원이 원본데이터를 제출 받아야 함에도 제출받지 않은 채 준공처리하여 ◇◇◇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담당직원이 원본데이터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본데이터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가 1년 2개월간 데이터 미제출로 계약 조건 위반이 인정됨
 - (보고서와 납품 시제품의 불일치) 보고서 기재 내용과 실제 납품된 시제품의 성분 차이는 부실 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계약 부당 이행) 위반이 인정됨

- (절차상 하자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일부 처분 사유(보고서-시제품 불일치)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심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인정됨

마) 소결(시사점)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납품한 시제품의 구성 성분이 다르고, 원본 데이터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 데이터 제출을 지연한 점이 문제가 되었음
- 데이터의 인도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인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쟁은 조정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적 규정이 없는 한 분쟁을 조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 것임
- 데이터 분쟁조정 유형화에 관한 시사점으로는, 계약조건 준수와 관련하여 원본데이터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데이터 거래 중 데이터의 인도에 관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외에도 보고서와 실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등이 사례로 다루어질 수 있고 이는 데이터 생성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신뢰성’의 유형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

2) 데이터 거래(정부지원금환수처분 취소)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4365 판결
- 행정기본법 제10조, 제27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 제4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A(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피고 : □□□□□

○ 사실관계

- △△부는 다음과 같이 ◇◇기업이 데이터 판매자의 지위에서 데이터 상품·가공서비스를 데이터 구매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에 제공하고 ‘○○○○’으로 지정된 피고 각각 기업의 선정 및 사업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B 지원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
- 이 사건 사업의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는 피고 및 원고를 선택한 5개의 ‘◆◆기업’과 2022. 6.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협약의 협약기간은 2022. 6. *.부터 2022. 11. **.까지였고, 사업비는 각각 약 8,700만 원 정도였는데(정부지원금 7,000만 원, 나머지는 민간부담금), ○○○○인 피고가 정부지원금의 80%(5,600만 원)를 선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되 나머지 20%(1,400만 원)는 사업 결과평가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제3조 제1항)
- 원고는 2022. 6. 19.경 위 협약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선금 각 5,600만 원씩의 합계 2억 8,000만 원(= 5,600만원 × 5개 기업)을 지급받았음
- 피고로부터 감리기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감리법인’이라 한다)는 2022. 9.경부터 2022. 10.경까지 이 사건 각 협약의 이행에 관한 감리를 실시한 후, 일부 과제 미수행[데이터 샘플의 정확성 기준(95%) 미달, 데이터 형식 및 범위의 불일치 등], ◆◆기업의 검수확인서 미제출, 간접경비 증빙 미제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협약 5건 모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제시함
- 피고는 위 감리결과를 근거로 2023. 1. 4. 원고에게 ‘4개 ◆◆기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선금의 환수 및 G와 관련된 정부지원금 잔금 미지급’의 제재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3. 1. 13.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재 심의 원안을 유지한다면서 정부지원금 선금의 환수방법을 안내하는 통보를 하였고, 2023. 2. 2. 재차 환수금액을 2억 2,400만원(= 5,600만 원 × 4개 기업)으로 특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함

다) 쟁점

- 협약의 법적 성격
- 채무의 존부
- 정부지원금 환수조치의 근거
-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 환수조치의 적정 여부

라) 판결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판결 이유
 - (협약의 법적 성격) 원고가 이 사건 각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이 단순히 일반적인 사법상 계약으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비례의 원칙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
 - 이 사건 각 협약은 원고와 이 사건 ◆◆기업 및 행정주체인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채무의 존부) 원고가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과업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감리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 사건 각 제재사유 자체가 모두 인정되고, 그 경우 이 사건 각 협약 및 이 사건 관리규정,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조치가 가능하며, 원고의 협약 위반 정도 및 이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의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정부지원금 환수조치의 근거) 이 사건 각 협약은 ◇◇기업에 대한 검수 결과 부적합 시 협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관리규정 제31조에 의한 제재 조치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의3 제4항, 제7조의3 제1항) 이 사건 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하여도 같음
-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 환수조치의 적정 여부) 이 사건 각 제재사유 모두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정확성이 기준에 미달하고 제공된 데이터의 형식 및 범위가 사전에 약정된 것과 상이하다는 제재사유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협약을 대부분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제재사유를 이유로 정부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원고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제재기준에 그대로 부합하고 제재 기준이 정부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일부 환수에 대한 내용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부지원금의 전액 환수가 원칙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협약 제5조의3 제4항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르러야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원고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제재사유는 위 규정상의 기준인 데이터 제공량과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에게는 단순히 협약 일부 불이행의 사유가 인정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제의 내용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감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등 다수의 제재 사유가 함께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협약 제5조의3 제4항의 내용 및 취지가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도 않는 점, 이처럼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감리에 성실히 응하지도 않은 ◇◇기업이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이 추구하는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에 따른 공익의 달성을 저해하고 공적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단지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정부지원금 잔금을 미지급한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야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관리규정 및 이 사건 운영지침에 규정된 참여제한, 부정당사업자 등록, 형사고발 등 원고에게 현저히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의 환수조치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마) 소결(시사점)

- 이 사건은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으로 하여금 데이터 ◇◇기업과 ◆◆기업을 선정하여 ◇◇기관이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의 데이터 ◇◇기업이 데이터 샘플의 정확성 기준(95%) 미달, 데이터 형식 및 범위의 불일치 등 과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문제가 된 사안으로 데이터 거래 중 데이터 제공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지원사업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수 등의 제재 및 소송 전 단계에서 데이터 ◇◇기관이 ◆◆기관에 대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단순히 정부지원금 환수가 아닌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다. 혼합 판례

1) 데이터 품질 및 제공(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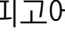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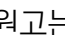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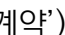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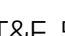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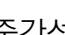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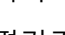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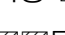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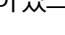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서울고등법원 2020. 1. 3. 선고 2018누744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73396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

○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3. ‘C사업’ 관련 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1. 4.경 피고에게 ‘D 탄’(이하 ‘이 사건 탄’)의 국내연구개발을 제안하여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됨
-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기존 탄과 새로 개발하는 탄의 혼합운용을 위한 최적 발사 시퀀스의 개발(이하 ‘E개발’이라 한다)이 반영된 C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한 M&S 수행을 위해 2013. 11. 6. ○○의 G회사와 T&E 및 M&S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2. 26. 이 사건 탄에 관한 1차 중간성능평가가 실시되었고(2013. 4. 26. 1차 중간성능평가의 재평가가 실시되었다), 2013. 12. 5.부터 2013. 12. 6.까지 피고 항공유도무기사업팀 관계관 등의 입회하에 이 사건 탄에 관한 2차 중간성능평가가 실시되었다. 피고는 2차 중간성능평가 결과 이 사건 탄의 I 강도가 ROC(작전요구성능)의 상한값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결과 판정을 보류함
- 그 후 이 사건 탄의 지상정적시험(Ground Static Firing Test) 및 지상동적시험(Rocket sledge Test, 1차 시험은 2014. 5.경, 2차 시험은 2014. 9. 2.~3., 3차 시험은 2015. 4.경 각 실시) 등 해외시험평가(T&E)가 실시됨.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탄에 관한 개발 및 운용시험 평가가 실시되었고 개발시험평가 결과 ‘비행시험’ 분야의 ‘기만성능시험’에서 고속기용 탄은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저속기용 탄은 기준에 미달하였고, 고속기용 탄과 저속기용 탄 모두 M&S의 유효성을 확인받지 못하였음. 또한, 운용시험평가 결과 이 사건 탄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됨
- 감사원 ○○○○특별감사단은 2016년 초부터 2017. 6.까지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감사 결과를 알리며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통보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함

다) 쟁점

- 허위서류 제출 여부
- 계약조건의 무효 여부

라) 판결

- 결과
 - 원고 승소
- 판결 이유

- (허위서류 제출) 이 사건의 인정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차 중간성능평가 결과 도출된 저속기용 4번, 5번 및 고속기용 1번의 Peak값을 조작하여 이 사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또한 이 사건 각 결과보고서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 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므로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서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이러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그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리를 토대로 보면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계약의 이행'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입법자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할 의도였다면, 그 용어를 '계약에 관한 서류'가 아닌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로 하였을 것임

-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 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 등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등을 포함한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부정 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 역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와 마찬가지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누32256 판결 및 대법원 2016. 2. 3. 선고 2015두54292 판결 참조)
- 나아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각 결과보고서가 허위 서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결과보고서가 허위서류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또는 원고의 허위서류 제출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시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이 사건 각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계약조건의 무효) 이 사건 각 결과보고서가 무효인 계약조건에 따라 제출된 서류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 개발 관련 제안요청 당시부터 E개발이 가능한 업체를 탐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이루어진 기술협상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E개발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E개발에 부수하는 시험평가 실시 역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약조건의 수용을 강요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E개발을 요구한 부분이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의나 형평에 어긋나는 계약조건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마) 소결(시사점)

- 이 사건은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의 측정 데이터 조작과 이를 활용한 허위 보고서 제출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데이터의 조작이 이루어졌고, 보고서의 작성 및 활용 과정에서 허위의 인식여부와는 별개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데이터가 반영되었다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봄
-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시험성적서 등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허위 또는 변조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은 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를 상대방과 합의 없이 변형하거나 조작하는 것으로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는데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위변조 문제에 대한 분쟁이 조정으로 신속히 보완된다면 사업의 추진도 원활하게 될 것임
- 다만, 행정은 공익 추구 및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처럼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인 민사 계약과 같이 조정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행정 분야의 데이터 분쟁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어 별도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2) 데이터의 생성, 거래, 활용(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가) 대상 판례 및 관련 규정

- 서울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8누35843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7767 판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행정절차법 제23조

나) 개요

○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A정보시스템
- 피고 : △△△

○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3. 10. 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7. 3. 27.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7. 4. 4.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시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과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6. 2. '입찰공고 시 제시한 과업에 대한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함
-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계약서에 정한 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제재 2개월의 처분을 함

다) 쟁점

- 이 사건 검색기능이 사업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특수사항 충족 여부 및 불충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라) 판결

○ 결과

- 원고 항소 기각(제1심 : 원고 청구 기각)

○ 판결 이유

- (이 사건 검색기능이 사업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서는 명시적으로 과업지시서를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켰고, 용역 입찰 공고 역시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성능 이상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며 인정사실,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검색기능은 사업의 주요부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검색기능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특수사항 충족 여부 및 불충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계약 위반 등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부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것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으며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마) 소결(시사점)

- 이 사건에서는 ‘지적문서 암호화 및 고도화용역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검색 기능 미충족 문제와 관련해 “검색기능은 단순한 부가기능이 아니라 이 사업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일부 검색 기능을 제대로 시연하지 못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안임
-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프로그램만 대상으로 보는 경우 이를 전적으로 데이터 분쟁의 유형으로 볼 수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본다면 색인 정보 입력과 검색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암호화 및 보안 솔루션을 통한 데이터 보호는 ‘데이터 활용’ 유형으로 그 중에서도 ‘데이터 보안 및 처리’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임

- 또한 지적문서의 디지털화(스캔작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속성 정보 입력 등은 새로운 데이터의 생성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데이터 분쟁 유형에서는 ‘데이터의 생성’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추가적으로 기존 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과의 데이터 연계와 다른 시, 군 등 행정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조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거래’ 유형 중 ‘데이터 연계 및 통합’ 유형에도 해당할 수 있음
- 데이터와 관련한 분쟁이 분쟁 유형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유형에 걸쳐 중복으로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분쟁조정 유형을 단일한 유형들로만 구성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Ⅲ. 데이터 관련 유사 영역 분쟁조정사례의 검토 및 제안

1. 유사 영역 분쟁조정사례 검토의 의의

가. 개관

- 본 장에서는 앞서 판례의 분석을 통한 분쟁 유형의 확대 검토하고는 달리 데이터 분쟁과 연관성을 가지는 여타 유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 중에서 데이터 분쟁조정위에서도 다룰법한 사례 유형을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함
 - 이 과정에서 실제 분쟁조정사례의 사안에서 데이터에 관한 다른 관련 쟁점들이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 데이터 분쟁조정을 통해 다룰 수 있다는 가상적 시나리오를 일부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분쟁조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음
- 그런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르고,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의 문언을 적극 해석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명시적인 분쟁 사유 외에는 일부 예외의 적용을 통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공공데이터 분쟁조정과의 관계

- 가령 데이터산업법 제34조 제1항에서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공거부 및 중단”에 관한 사항만을 공공데이터법에 이관하도록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쟁점으로서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적법성 판단 문제나 수익화 과정에서 공공데이터의 원권리자(개인정보,

저작권, 영업정보 등)에 대한 권리 침해 분쟁 등은 공공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라 할지라도 데이터 분쟁조정을 통해 다루는 것이 해석상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그 밖에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분쟁이더라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에서 활용되는 통계데이터 등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된 사례가 있다면, 이 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후의 문제로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함

○ 또 한편으로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데이터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경우 데이터의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법인 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이러한 경우 데이터의 구매 및 협약 등에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다. 개인정보 분쟁조정과의 관계

○ 다음으로 데이터산업법 제34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둘러싼 분쟁은 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개인식별가능성)가 불분명한 사안이거나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거래 재화로서의 데이터)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라.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조정과의 관계

○ 저작권의 경우에도 앞서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산업법 제34조 제1항에서 전적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에 일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저작권 관련 사안은 저작물이 최근 들어서는 주로 콘텐츠의 형태로 제작·유통되므로 유사 영역의 분쟁조정위원회인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와의 접점이 존재함

- 저작권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쟁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저작물의 유형별로 침해 여부에 관한 분쟁사안만을 다루고 있는 반면,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게임, 영상, 지식정보, 만화, 캐릭터 등의 영역별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게임 아이템, 약관정책, 결제·환불, 서비스 오류, 허위광고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로 지정되어 있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비자 구제 신청이 가능함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한 피해 구제를 포괄하므로, 콘텐츠 혹은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콘텐츠 또는 저작물 자체(데이터)의 법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면 데이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콘텐츠 및 저작물과 관련한 분쟁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음

마. 소결

-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 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여타 유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분쟁사항이더라도 1) 공공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산업법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제공 중단에 대해서만 개별법에 일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쟁점사항(활용 이후 시점의 쟁점이나, 공공데이터 재판매 문제 등)이 문제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이거나,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3) 저작물과 콘텐츠의 경우 저작물의 유형 및 콘텐츠 산업 영역에서의 문제인지 여부를 떠나 데이터 자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그 밖에도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 쟁점이 1) 특정 위원회를 소관으로 정하기 모호하거나 불확정적인 경우, 2) 여러 위원회에 걸쳐져 있어 특정 위원회의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이러한 판단요소에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요소를 포함하고

- 있는 경우, 3) 소관은 명확하나 분쟁의 대상인 개인정보 혹은 저작물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명확하여,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특별법적 성격의 부정경쟁방지법 포함) 또는 계약법적 쟁점과 함께 다루어야 하므로 종합적인 분쟁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 한편, 데이터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산업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체계화된 형태로 정렬된 형식을 갖춘 데이터뿐 아니라, 자료나 정보의 형태, 나아가 콘텐츠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까지 포섭하여 다룰 수 있도록 분쟁의 대상을 보다 폭넓게 설정함이 필요함
 - 이하에서는 여기서 정리한 시사점을 토대로 각 분쟁조정 사례에서 데이터 분쟁조정 사례에 편입하여 다룰 수 있을만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도록 함
 - 다만, 공공데이터 분쟁의 경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데이터산업법에서 위임 시켜 놓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해당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분쟁사례는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가. 동의 없는 CCTV 열람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본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근무 담당자가 신청인의 결근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명을 거부하자 CCTV 열람을 통해 영상을 확인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주장한 사례에 해당함. CCTV를 데이터 자산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를테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학습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의 정보주체가 면책 적용의 제외를 요구하면서 인격권적 침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이러한 경우 데이터자산의 인격권적 침해에 대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며, 피신청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이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신청인의 근무지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방학기간 동안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신청인의 출퇴근이 관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지문을 시스템에 등록하였음. 피신청인은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4일치의 신청인 지문이 미등록된 것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이 위 근태자료를 신청인에게 확인시키고 결근 정황에 대하여 그 사유를 물었으나, 신청인은 매일 정상출근 후 지문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1일에 대해 소명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하여 정상 출근했다고 주장하다가 추후에 4일 중 3일에 대하여는 컴퓨터 IP기록으로 출근에 대해 소명을 하였으나 나머지 4일에 대하여는 소명을 거부하고 사유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함께 CCTV를 열람하자는 피신청인의 제안도 거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출퇴근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교문 입구를 비추고 있는 CCTV의 영상(이하 당해 CCTV는 ‘이 사건 CCTV’라 하고, 해당 CCTV에 의해 피신청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열람하기에 이르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영상 열람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병역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복무를 지도감독할 복무 관리책임자로서 신청인의 복무관리라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였다고 주장

2) 처리결과

○ 이 사건 영상에 녹화된 신청인의 영상정보는 그 자체로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수행 지휘·감독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먼저,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장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적용규정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CCTV는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는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장소로 볼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해서는 그 설치 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일반원칙이 적용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되며,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이 사건 영상 열람 행위는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 등에 규정된 피신청인 교장의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지휘감독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비추어 살피건대, 특수아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관리감독을 통해 특수아동의 권익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피신청인의 이 사건 CCTV 열람행위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같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이 사회복지요원으로서 사회복지요원 복무규율 제7조의 복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여짐

-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의 CCTV 열람행위가 신청인이 2차에 걸친 소명요청에 불응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비추어 보아 신청인의 복무관리 감독이라는 정당한 이익 달성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으며,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날에 한해 실시되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영상 열람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본 사건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콜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해 동의없이 광고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례로서 이러한 문제가 인터넷상의 IP 주소나, 쿠키를 수집하는 경우 이들 정보값의 경우 개인정보성(결합가능성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어)이 이용불분명한 데이터자산이므로, 명확히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보 활용의 경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다루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품문의 등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한 자이며, 피신청인은 소매업을 영위하며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신청인의 전화에 대해 콜백 서비스를 통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자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의 콜백 서비스로 인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메시지가 전송되었음.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품문의 등의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고 피신청인이 이를 받지 못하자 콜백 서비스가 가동되어 이 사건 메시지가 전송되었을 뿐 피신청인이 불법적으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광고문자를 발송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한 것은 신청인이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분쟁조정이 시작된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여 문자가 더 이상 전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2) 처리결과

- 이 사건의 신청인 연락처는 그 자체로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콜백(callback) 서비스 이용자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법 제22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은 ‘동의’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서(서명날인, 구두, 홈페이지 동의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피신청인은 콜백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인의 연락처를 수집하였으며, 신청인이 자신에게 전화한 행위를 두고 신청인이 연락처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외 신청인으로부터 연락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청인 전화번호 수집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위배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 다만, 신청인이 상인인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건 행위는 피신청인 판매 상품에 대하여 문의하려는 전화로 추단되는 점 및 이 사건 메시지에는 피신청인 매장의 연락처와 주소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메시지는 광고성 목적보다는 피신청인이 전화를 받고 응대하지 못한 경우 전화를 건 상대방(신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문자 전송 행위도 1회에 그쳤으며 문자에 무료 수신 거부 안내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 의료자문에 이용한 것에 대한 침해 행위 중지 등 요구

본 사건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질환정보를 다른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문제된 사안임. 질환정보는 민감 정보로서 데이터의 관점에서 활용성이 높은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본 사안과 같이 정보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 외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적 목적의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권적 손해에 대한 주장이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이 병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임

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설치된 위원회에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한 자임
- 신청인은 신청인의 질환에 대한 보통의 심사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재심사를 청구하며 그 증빙자료로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동의서에는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사망 및 상이구분 결정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재심사 청구인 및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산하기관 등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환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판단을 위해 피신청인 산하 전문기관에 의학자문을 요청하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사본을 전달하였음

- 신청인은 이 사건 동의서 제출을 통해 위원회의 위원이 전공상 재심사를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외부 자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전문기관에 신청인의 민감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9조, 제23조에 위반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에 대해 같은 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전공상 심사목적으로 자문의뢰를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한 것이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에 피신청인이 장애보상금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접수받은 서류를 안전한 물리적 장소에 보관하였고, 의학 자문 의뢰 시에도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접근 제한을 위해 전자적 방식의 전송이 아닌 대면 전달 방식으로 자문의뢰 전문의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함

2) 처리결과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정보이고, 특히 증빙자료에 기재된 질환명 등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임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위원회 운영 등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전문기관은 장병 진료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군인사법」 제54조의4에서는 전공상 재심사를 피신청인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6조에서는 심사업무 수행목적으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전공상 재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질환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하나, 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 외부기관에 의학자문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공에 대한 별도의 신청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11) 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신청인은 군복무 등의 훈련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12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물리적 보관장소에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할 것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상이심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취급자만 출입하고 있고, 업무처리 대장을 통해 해당 자료의 반입·반출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라. ○○○○○○의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
사용량 정보(상황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 가능)의 제공 요청⁷⁾**

이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번별 물사용량이 대상에 따라 개인정보인 경우도 있고 (지번별 1인 가구인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공동주택 등 지번이 하나인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정보만이 아닌 데이터기반행정이나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이처럼 개인정보 외에 이종의 다른 법적성격을 갖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개별적인 질의 또는 조정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서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등 각각의 데이터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여러 성격의 데이터가 연계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제도 개선을 한다면 조정을 신청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건번호 : 제2023-105-011호

1) 사건개요

-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7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신청인(○○○○○○○,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있음
- 환경부는 하수도 범람 등으로 인한 도시침수나 하수 누출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하수도 시설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하수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하수도 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용가정보시스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지속적으로 물사용량 증감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비정상 유입량 등의 분석과 하수 처리시설 증설 필요성 검토 및 하수관로 개량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이에 공단은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량 정보(이하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처리결과

- 환경부는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아울러,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단은 보호법 제26조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받은 범위에서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와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보호법 제26조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함(제2조 제1호)
- 수도요금의 경우 다세대·다가구·아파트 등의 지번을 같이 하는 공동주택에 하나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번별 상수도 사용량 정보는 다수 세대의 상수도 사용량이 합산된 정보로서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번 주소에 1인 가구만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지번별 상수도 사용량이 해당 거주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수도사용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의 정보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별 상수도 사용량 정보에는 보호법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의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번별 지하수 사용량은 해당 지번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1인인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지하수 사용량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함
 - 이와 같이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는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공단은 이를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므로, 이하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전제로 검토함
- (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공단의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이때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8. 7. 23. 제2018-14-133호 참조).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가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환경부는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단과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환경부가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68조의2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2항은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하수처리시설 용량 및 하수관로 크기 결정 등 하수도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하수량은 정보분석의 기초 자료로서 반드시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수도과 지하수의 사용량을 오수전환율로 환산하여 하수량을 산정하고 있는 등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은 하수량을 가장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0. 5. 18. 개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시 기존 처리구역을 지번 단위로 구분·분할하여 물사용량, 인구 등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하수도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은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임 따라서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2항은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환경부가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아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환경부를 비롯하여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사, 통계청 등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정한 하수도 정책의 수립·시행 및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과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하수관 파열로 인한 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약화로 분석되고 있는 점에서 하수 유출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하수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그 공익적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 그리고 하수도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는 행정자료로 활용될 뿐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거나 특정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활용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환경부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이 결정은 신청인인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지번별 물사용량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 사안으로서, 지번별 물사용량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2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지번별 물사용량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결정함

3.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

가. 뉴스기사에 대한 무단복제 사건

본 사건은 뉴스 기사를 무단복제한 것이 문제되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으로서 뉴스기사의 저작물 해당성이 문제되었는데, 단순 사실 자료와 같은 기사는 창작성을 갖지 않아 모든 뉴스 기사가 저작물인 것은 아니어서 상당한 노력이 투자된 데이터 산업법상의 데이터 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다루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언론사이고 피신청인은 기업의 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뉴스란에 신청인의 뉴스기사 00건을 무단 복제하여 2년 4개월 동안 게시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사들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고지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의 공문을 받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들을 삭제한 것은 확인하였으나, 피신청인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년 4개월간 홈페이지에 00건의 뉴스 기사를 무단 사용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음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 뉴스기사는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이러한 저작물을 해당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복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다른 업체나 개인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이용이 아닌 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의 뉴스 기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함. 무단 복제로 침해자가 얻는 이득의 산정은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임

- [피신청인] 신청인의 뉴스기사들을 사전 허락 없이 게시한 사실을 인정함. 다만 뉴스를 복제하여 올린 것으로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없음. 해당 기사들을 삭제하여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바,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 희망함

3) 사안의 검토

- [저작물 해당 여부 및 저작권 침해] 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라고 판단 하면서, “보도기사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 길이 등에 비추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그 밖의 문장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나2355 판결)고 판시하였음
- 당해 사건에서의 뉴스기사가 모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기사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침해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당해 기사는 단순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기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고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한 후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4) 조정결과

- 조정부는 사용료, 뉴스기사 사용기간이 2년 4개월인 점,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음

나. 미술품 무단 철거에 따른 저작인격권 분쟁

본 사건은 명확하게 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무단 철거가 저작인격권 혹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화상디자인이나 삽화, SNS 통해 끔찍한 메모, 캐치프레이즈 등이 웹페이지 폐쇄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소실·멸실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데이터자산에 대한 침해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서양화가이자 다수의 건축물에 미술품을 제작, 설치하여 온 공공미술작가이고, 피신청인은 00학교 등을 운영하는 법인임. 신청인은 19xx. x. x. 피신청인과 00시 00구 00동에 소재한 00빌딩 현관벽 벽화공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xx. 00빌딩(1층 로비홀)에 미술품(작품명: A)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음. 그런데 신청인은 201x. x.경 미술품(A)이 설치된 00빌딩 건물이 201x. x.경 철거되면서 신청인의 허락도 없이 신청인의 미술품(A)도 함께 철거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에 신청인은 미술품(A)의 철거로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금 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음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설령 피신청인이 위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사전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신청인의 작품을 파괴, 철거한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19xx. x.경 신청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19xx. x.경 미술작품(A)를 매입하여 소유하였는바, 신청인은 소유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없음. 즉, 피신청인은 소유권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한 것일 뿐 이므로 신청인이 이러한 처분행위를 제한할 근거는 없음

3) 사안의 검토

- 용역계약서에는 미술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나 미술작품의 유지 및 철거에 관한 내용은 없었음.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당시 용역비로 00원을 지급하고 (A)를 인도받아 소유하게 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신청인이 대가를 취득하여 미술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은 본 사안에서 저작권 행사로 피신청인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폐기철거행위를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임
- 그런데 본 사안과 유사한 사건인 도라산역에 설치된 벽화를 창작자인 원고의 동의없이 떼어 낸 후 소각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벽화를 떼어낸 후 소각하여 폐기한 것은 이 사건 벽화의 소유권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 저작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② 피고 산하 남북출입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벽화를 철거한 후 소각한 행위는 원고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라고 판단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 31842 판결)
- 그러나 저작인격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 권리가 더 우선하여야 하느냐에 관하여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의 다툼이 있는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4)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재건축에 따른 건물철거로 신청인의 작품을 사전 동의 없이 함께 철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자 하나 저작권 침해는 아니므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이에 조정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본 사안의 경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상존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위자료 지급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조정으로 합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에 따라 불성립 종결 처리함

다. 공동저작자 여부에 관한 분쟁 1 : 성명표시권 침해 분쟁

본 사건은 애니메이션 제작 초기 단계에서 최종 반영된 시나리오의 완성이 전 단계에서 집필에 참여한 신청인이 성명표시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로서 데이터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가공데이터에 기여한 당사자 간의 지분권에 대한 분쟁이 존재할 수 있음. 기여의 존부에 대한 쟁점을 비롯하여, 사전에 정한 지분권의 비중에 대한 변경 필요성에 대한 분쟁 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 데이터 생산·가공 등의 제작에 있어서의 권한 분배에 대한 문제는 데이터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시나리오 작가이고 피신청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및 콘텐츠 제작을 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201x. x.경 피신청인과 (A)의 집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나리오를 집필하였음. 피신청인은 201x. x.경부터 00를 통해 (B) 애니메이션을 방송하였는데 주요 상황설정과 에피소드, 캐릭터가 신청인 시나리오와 동일하여 신청인을 작가 크레디트에 올려 주기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신청인은 성명 표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음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A) 시나리오 집필 당시 주요 캐릭터의 이미지 외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없어 신청인 고유의 아이디어로 주요 설정 및 배경, 주인공 캐릭터의 특징 및 주변 캐릭터를 창작. (B)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결과 (B) 애니메이션의 주요 에피소드들은 신청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었음. 이에 피신청인에게 크레딧에 신청인을 작가로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음
- [피신청인] 신청인 시나리오와 (B)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나리오로 신청인 시나리오와 피신청인 애니메이션은 별개의 독립된 작품, 즉, 신청인 시나리오와 피신청인 애니메이션은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 컨셉이 완전히 달라 유사성이 없고 피신청인 애니메이션은 2차적저작물도 아닌 별개의 창작물. (B) 애니메이션은 신청인이 아닌 새로운 작가들의 고유의 아이디어와 설정, 컨셉, 에피소드들을 기반으로 새로이 창작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

3) 사안의 검토

- [저작권격권 불행사 특약의 효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시나리오 집필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 시나리오의 모든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고 신청인 시나리오 사용에 관하여 저작권격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음. 저작권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저작권격권 불행사 특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계약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형태와 관련하여 저작권격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본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저작권격권 불행사 특약에 대해 신청인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므로 피신청인이 위 특약의 존재를 이유로 저작권격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저작권 침해 여부] (A) 시나리오와 (B) 애니메이션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제와 캐릭터의 설정, 배경 및 주요 소재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캐릭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한 이야기 전개, 구체적인 에피소드 및 구체적인 대사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양 저작물이 구체적인 에피소드 및 대사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점이 있으나 주제, 전개 과정이나 캐릭터의 포괄적인 설정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있고, (A)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하던 중에 (B)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신청인이 (B)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설정, 배경, 주요 소재 등의 창작에 기여한 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본 사건의 조정 단계에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살펴본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성명을 크레딧에 기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본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조정결과

- 조정부의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침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견이 상이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음. 이에 본 사건은 조정을 통하여 합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결국 불성립, 종결처리됨

[관련 판례] 시기를 달리하여 2인 이상이 창작에 참여한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2950판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2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 저작물”을(같은 조 제21호) 각자의 기여가 동시에 행해진 경우뿐만 아니라 창작적 기여의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저작물에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창작에 참여한 경우, 선행 저작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후행 저작자가 이를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을 허락 내지 승인하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는 선행 저작자의 저작물에 터잡아 새로운 창작을 부가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 점에서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없이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 저작물’과 구별된다).

특히 시나리오와 같이 여러 집필작가의 동시 또는 순차의 수정작업에 의하여 완성되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나리오를 각 작가가 기여한 부분별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라면, 후행 저작자의 수정·보완의 결과 선행 저작자의 창작적 기여부분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성된 저작물은 이에 대하여 창작적 기여를 한 작가들의 공동 저작물로 봄이 상당하다...(중략)... 원고 시나리오가 영화제목이나 주제, 전개과정이나 인물들에 대한 포괄적인 설정에 있어서 G 시나리오와 유사한 부분이 있고, 일부의 장면에서는 그 대사가 유사 하더라도, 원고 시나리오는 주제를 향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나 구체적인 상황설정, 대사의 구체적인 내용, 특징적인 표현에 있어서 G시나리오와 많이 다르고, 대사가 동일한 장면은 원고 시나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며 그 내용도 일상적인 대화에 불과하여 전체 적인 줄거리와 주제를 이끌어가는 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라. 공동저작자 여부에 관한 분쟁 2 : 성명표시권 침해 분쟁

본 사건은 집필계약에서 신청인이 창작한 극본을 가지고 방송프로그램에 출품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실제 출품한 것은 극본이었으므로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후 드라마 제작 시 신청인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 자산의 경우에도 공동생성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공동생성데이터를 계약단계에서 어떠한 사항을 정하느냐에 따라 어느 범주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혹은 계약에 따른 처분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의 멘토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극본을 공모전에 제출하여 당선된 후 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당선사실조차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았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드라마 제작 시 원작자 크레딧에 신청인의 성명을 표기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계약해지 합의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음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던 중 피신청인을 멘토로 만나 피신청인과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청인의 극본을 공모전에 제출하여 당선된 후 상금을 지급받았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당선사실 조차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계약해지 합의서에 날인. 계약해지 합의서의 효력은 무효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향후 드라마를 제작할 경우 원작자 크레딧에 신청인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
-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창작한 극본은 독립된 공동저작물이고, 피신청인이 공모전에 제출한 극본은 신청인 극본의 내용과는 상당 부분 다름. 또한 피신청인은 공동창작한 극본을 바탕으로 드라마 제작 시 신청인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합의는 신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계약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사안의 검토

- [공동저작자인지 여부]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판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극본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한 경우여야 하고,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한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로 볼 수 없음. 본 사안은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있음
- [계약 위반] 방송극본 집필계약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방송 프로그램을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청인이 공모전에 제출한 것은 방송프로그램이 아니라 극본이었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극본을 공모전에 출품하여 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신청인에게는 당선사실조차도 알리지 않은 것은 양 당사자 간의 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

4) 조정결과

- 조정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조정기일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 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극본을 바탕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을 극본 집필자로 표시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였음. 양 당사자 모두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직권조정결정의 내용대로 성립하였음

마. 음악변형 사용으로 인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본 사건은 A라는 곡을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로서,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의 경우 저작물에 적용되는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데이터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하는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이를테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공받은 데이터와 동일성은 유지한 채 일부만을 변경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등 계약 위반의 소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드라마 OST앨범에 수록된 (A)라는 곡의 작곡가이고 피신청인은 음원 제작, 유통 및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A)곡을 신청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다수의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판매, 유통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음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침해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유감 표명, 사실 소명 등의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침해 사실을 부정. 그러나 신청인은 본인의 저작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변형, 발매되어 창작자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및 위자료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피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음악이 코드 변형, 반주 형태 변형, 멜로디 변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람 목소리로 가창한 선율을 악기로 변경하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정도의 코드 변형이 있었을 뿐이고 원곡의 멜로디(선율)를 변경한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음. 무엇보다 청음상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원곡과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3) 사안의 검토

- [저작권 침해 여부] 우선 피신청인은 (A)곡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00에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서를 받고 (A)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저작재산권에 대하여는 적법한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 피신청인이 00로부터 (A)곡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신청인에게 전속하므로 신청인은 이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음악을 무단으로 변형하여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원곡과의 차이가 극히 미미하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음

※ [판례]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용 반주곡으로 제작하면서 일부분의 선율을 변경하고, 원곡과 다른 코러스, 랩, 의성어 등을 삽입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러한 변경만으로는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참조)

-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신청인은 00에 신청인의 음악을 신탁하여 00가 음원 제작사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

므로 신청인의 음악을 피아노곡으로 연주하면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보기에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됨

4) 조정결과

- 조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차 기일에 걸쳐 양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음악저작물 사용현황 및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A) 곡의 피아노 음원을 해당 앨범에서 삭제하며 음원의 사용 및 유통을 중단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신청인 측이 조정부의 권고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불성립으로 조정이 종결되었음

**[관련 판례] 음악저작물의 변경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0가합19544 판결)**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저작자에게 동일성유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

피고 티제이미디어가 제작한 일부 노래 반주기에 수록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은 원곡과 다르게 새소리와 물소리 또는 남자 목소리로 된 랩 부분이 삽입 또는 삭제되거나, 일부 멜로디가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티제이미디어는 저작권협회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 반주기에 수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은 것인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 반주기에 수록하기 위하여는 기술적인 문제로 수정을 가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 티제이미디어가 위와 같이 일부분에 이용자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효과음이나 랩을 삽입 또는 삭제하였거나, 음악 전문가가 아닌 이용자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극히 일부분의 멜로디를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음악저작물이 노래 반주기에 수록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티제이미디어의 위 행위가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판례] 부분적 이용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바. 음악의 이용허락 여부에 관한 분쟁

본 사건은 음원의 이용허락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서 신청인이 대가의 지급없이 음원을 이용하는 것을 협상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별도의 요구 조건 없이 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바, 조정부에서 이용료 지급을 명시한 사건임. 데이터의 경우에도 고가치의 데이터일수록 이용허락의 범주와 관련하여 계약상 예견 가능한 허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문화복합예술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신청인은 가곡 00의 작사가의 승계인. 신청인은 가곡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해 가곡을 음악가들의 연주로 리메이크한 후 음원 및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원작곡가와 원작사가들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하고 피신청인에게도 위 내용을 우편으로 전달하며 이용허락 및 개작 동의를 구하였음. 그런데 피신청인은 별도의 대가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이용허락을 해주었고 이후 개작동의서에도 서명해 주었음. 이에 신청인은

위 프로젝트에 피신청인의 가곡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갑자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대중들이 친숙하도록 2차적저작물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음악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작곡가와 작사가 모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허락을 받기로 하였고, 피신청인에게 프로젝트 내용을 우편으로 전달하였음. 피신청인에게 전달된 우편 내용에는 저작권료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협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음. 그런데 피신청인이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료 지급 없이 피신청인의 음악을 이용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수개월 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
-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됨.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3) 사안의 검토

-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다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 그러나 대가없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첫 편지의 하단에는 작가분께서 요청하실 경우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으로서는 이용 허락시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임

4) 조정결과

- 조정기일에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조정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 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향후 본 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송달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 종결되었음

[관련 판례] 이용허락계약의 해석 기준(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 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한편, 음반 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제작문의 이용방법이 기존 시장은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 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등 참조).

4.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⁸⁾

가.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본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내역 확인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례에 해당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온라인게임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수신하고, 피신청인(게임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내역의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처리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인증 및 유출 내역 등에 대해 확인, 이상이 없음을 답변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방안을 안내하여 조정전합의로 종결됨

나. OTT 계정 정보 유출 의심 사례에 대한 대응 요청

본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내역 확인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례에 해당

1) 사건개요

- OTT 서비스 A를 이용 중인 신청인은 A에 등록된 이메일, 결제 정보 등 개인정보가 해외 사이트에 유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알려줄 것을 피신청인(A)의 고객센터에 상담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함

8) 여기에서는 2020-2024년도 분쟁사례집을 참고로 하여 발췌·정리하였음.

2) 처리결과

- 피신청인은 확인 결과 해당 정보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함
- 다만 계정 보안을 위하여 신청인의 정보를 비롯한 해당 사이트 기재 A회원들의 비밀번호를 모두 초기화하고, 도메인 사업자에게 사이트 차단을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림
- 피신청인의 답변에 대해 신청인이 별도로 답변하지 않아 사건 종결됨

다. 게임 내 특정 캐릭터 소실 관련 환불요청

본 사건은 게임에서 캐릭터가 사라지는 오류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환불 요청에 대한 분쟁으로서 캐릭터의 소실로 인해 그간 게임한 기록과 캐릭터의 정보가 함께 소실되었다면 이는 데이터 소실에 대한 문제로서 일부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과금을 통해 성장시킨 캐릭터가 접속 시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했고, 이후에는 게임 접속조차 되지 않아 게임사에 문의를 넣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함
- 피신청인은 계정 중 특정 서버에서 특정 캐릭터만 접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고 답변함
- 이에 신청인은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처리결과

- 피신청인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을 파악 중에 있으며, 해결을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안내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다른 서버 이용을 할 경우 적절한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함
- 신청인은 게임 접속조차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합의로 분쟁이 해결됨

라.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계정의 이용제한 해제 요청

본 사건은 아이디/패스워드가 도용되어 본인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플랫폼 계정이 이용 제한된 것에 대해 해제를 요청한 사안인데, 여기에서 아이디/패스워드는 해당 정보의 처리 맥락에서 다른 정보와의 결합가능성 및 그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혹은 데이터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이용하던 게임 플랫폼 계정이 갑자기 이용제한되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피신청인에게 문의함
- 피신청인은 플랫폼 내 000 게임의 계정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여 영구 정지됨에 따라 플랫폼 계정도 이용이 제한되었다고 답변함
- 신청인은 000게임을 이용한 적이 없고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해 계정이 생성된 것임을 주장하며 플랫폼 계정에 대한 이용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처리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플랫폼 계정을 통해 000게임 계정이 생성되었고, 그 계정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칙에 따라 플랫폼 계정도 이용 제한된 것이라고 답변함
- 다만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계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킹의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어, 플랫폼 계정에 대한 이용제한 해제를 결정하여 원만한 합의로 분쟁이 해결됨

마. 게임 아이템 소실로 인한 피해

본 사건은 게임 아이템 소실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 사안으로서 아이템이 게임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면 게임을 통해 일궈놓은 캐릭터는 재화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다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게임 내에서 과금을 통해 아이템을 강화하였으나, 강화 중에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한 채 소실되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이템 강화 단계에서 실패하여 소실되었다고 답변함
- 이에 신청인은 아이템 소실 전에 팝업 등 적극적인 안전장치가 없어 발생한 피해를 환불할 것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처리결과

- 피신청인은 게임 내 모든 이용자가 아이템 강화 시 안전 강화 단계에 노출되며, 강화 실패 시 아이템 소실될 수 있음을 붉은색으로 강조하여 안내하고 있음을 제시함
- 다만 신청인은 게임상 문제가 아닌 정상적인 강화를 통해 소실된 아이템은 복구가 가능하다는 피신청인 답변을 받아들여 합의로 분쟁이 해결됨

바. 의뢰인의 작업물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비율 조정 요청

본 사건은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용역계약에서 작업물의 품질과 관련한 환불요청 사례로 이러한 콘텐츠 제작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데이터의 가공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작업물이 대상인 경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안서 작업을 의뢰받아 작업물을 제작하였으나, 작업 도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작업물의 완성도와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환불을 요청함
- 신청인 역시 최종 작업물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환불해 줄 의사는 있었으나 신청인이 판단한 환불 비율과 피신청인이 제시한 환불 비율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 이에 신청인은 환불을 진행함에 있어 적정 비율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처리결과

- 신청인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신청인이 요청한 수정사항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작업 시간 역시 많이 할애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환불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평가를 부정적으로 작성할 경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제시한 환불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작업물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제 금액의 대부분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피신청인이 제시한 환불 금액을 일부 수용하기로 하여 원만한 합의로 분쟁이 해결됨

사.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정기결제 정책 불만

본 사건은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정기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한 사례로서 신청인이 요청한 사안에서 신청인은 음원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계약한 것이므로 이는 데이터 제공 계약에 해당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여지가 있다고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년 7월 경 피신청인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1회성으로 음원 30곡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결제하였는데, 추후 신청인이 결제한 것은 정기결제 상품으로 2021년 3월까지 자동 결제된 것을 확인함
- 신청인은 음원 첫 달에 음원을 30곡 다운받은 것 이외 다른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며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기결제 정책으로 부당하게 결제된 요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처리결과

- 피신청인은 해당 상품 구매 시 정기결제에 대한 안내는 이용자의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안내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다만 신청인이 실제로 2020년 7월에만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확인되어, 예외적으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8개월간 결제된 금액을 환불 처리하겠다고 답변함
- 이에 신청인은 정기결제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피신청인이 이용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해 안내하는 절차를 청인의 이를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로 분쟁이 해결됨

아. 소프트웨어 제작 계약 용역대금 반환 청구

본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의 불완전이행과 관련된 사례로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 및 공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된 학습데이터와 파라미터 값 혹은 분석결과에 해당하는 파생데이터 등의 소유 권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다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업으로 하는 피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 제작을 의뢰하였다. 2018.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5차에 걸쳐 총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2018.9.까지 소프트웨어를 완성하여 제공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5차에 걸쳐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납품기한인 2018.9.까지 제작물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제작물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2019.6.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기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이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기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리결과

- [신청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 사건 계약 전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으며 그 점을 감안하여 납품기한이 지나도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최종 결과물을 납품받지 못하였다.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외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용역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한 추가 지출도 상당하여, 용역대금 및 추가 지출금액 모두 반환받고자 함
-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용역 결과물을 전달하였으나 신청인이 총 25건의 변경 요청을 하였음. 신청인의 요청에는 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다수 있었지만 피신청인은 본 건 계약 전부터 이어진 신청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 주었음. 불가피하게 일정 지연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최선을 다해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수정된 용역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은 트렌드가 변했다는 이유로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달라며 완성된 결과물을 인도받지 않았으며,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기 때문에 대금 반환 의무가 없음

- [조정결과] 조정부에서 대면, 분리 조정을 통해 합의를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가 커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었음

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서 수강여부 관련 데이터 오류에 따른 환불 요청

본 사건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수강과 관련하여 잦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수강료의 환불을 요구한 사례로서 수강여부에 대한 데이터 오류가 계약관계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쟁점이 다투어진 것이어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온오프라인 교육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신청인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중 수강료 환급반을 신청하여 약 45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수강료 환급반은 수강기간 동안 매일 1개씩 강의 학습을 완료하면 수강료를 100% 환급받는 구조인데, 결제 당일부터 오류가 자주 발생하였음. 수강기간 도중 수강료 환급기준 달성여부를 확인한 신청인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미 환급기준에 미달된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에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강기간 동안 시스템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학습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음. 신청인은 신청인의 과실이 아닌 오류로 인하여 총 수강기간 중 50%도 이용하지 못하였다며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2) 처리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접속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학습기록이 확인되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음. 다만,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신청인이 오류로 강의를 수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해당 금액만큼 환불하겠다고 제안하였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답변을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었음

차. 상품 설명정보[데이터]의 미비에 따른 환불 요청

본 사건은 VOD 서비스 시청과 관련하여,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상세설명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한 사안으로서 상품과 관련하여 제공된 데이터(정보)의 미비로 인한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이므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임

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웹툰 및 영상 VOD 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신청인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임. 신청인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해외 드라마 시리즈 시청권을 구매하였음. 신청인은 해당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드라마 영상이 원본이 아닌 영상 일부가 삭제된 편집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구매 당시 상품 상세설명 페이지에는 드라마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영상이 편집본이라는 안내가 없었음. 신청인은 원본에 비해 드라마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색하고 작품성이 저하되어 더 이상 드라마를 시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음. 하지만 피신청인은 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편집된 영상이며 무삭제본의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있어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용자에게 영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상품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정정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2) 처리결과

- 피신청인은 무삭제 콘텐츠의 경우 무삭제본이라는 별도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이용자가 영상의 원본과 편집본을 구별할 수 있으며, 모든 영상의 상세설명 페이지에 콘텐츠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음. 또한 신청인이 이미 구매한 콘텐츠의 75%를 열람하여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나, 무삭제본에 대한 안내문구가 상품 상세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착오로 상품을 잘못 구매하였을 수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환불하고 상품 상세설명도 보완하겠다고 하였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답변을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었음

5. 상사중재 사례

가. 업무위탁 종료 후 프로그램 및 고객정보 반환청구 사건

1) 사건개요

가) 대상 사건

-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중재 제1311-0110호

나) 개요

○ 당사자

- 신청인 : 위탁자(‘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서 피신청인에게 A은행, B은행에 대한 전자무역포털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탁함)
- 피신청인 : 수탁자

○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5. 5. 31. 및 2006. 3. 14. 피신청인과 A은행, B은행 에 대한 전자 무역포털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구축 후, 위 은행들의 웹호스팅 및 시스템의 유지,

관리 등의 업무의 대행을 피신청인에게 위탁하기로 하여 2006. 4. 28. 피신청인과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간 유효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지의사 표명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하기로 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8년 5월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2008. 5. 1.부터 1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지의사의 표명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필요한 운영경비를 월 금4,000,000원(연 금48,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고 2011. 9. 1.에는 피신청인의 서비스운영관리 업무의 구체적 내역을 수정함과 동시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웹EDI 서비스 매출의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1. 8. 서비스 이용 매출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추가로 2011. 7. 피신청인측 순투입 인건비 금 32,000,000원을 3회 분할하여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다른 기존 계약 내용은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을 변경하기로 약정함
- 이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A은행 및 B은행의 웹EDI 서비스의 웹호스팅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정보를 관리하였으며, 이 운영협력계약에 따라 매 1년씩 자동연장됨
- 신청인은 2013년에 피신청인과 위 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하고 그 계약종료 일인 2013. 4. 30.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되기 전인 2013. 2. 18. 피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에 대한 해지통보의 취지와 함께 인수인계를 위해 우선 고객정보 일체를 엑셀파일로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담은 서면을 발송하여 그 서면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함
- 피신청인은 은행 전자무역포털서비스에 탑재된 웹EDI 솔루션은 피신청인 소유 솔루션이며 동 솔루션 기반 서비스 운영업무도 피신청인의 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웹EDI 솔루션과 피신청인 회사 고객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고객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을 거부함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각 은행의 웹EDI 가입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2013. 5.부터 같은 해 9.까지 그 고객들로부터 기본료 및 전송료 명목으로 수익을 거둠

다) 주장 및 쟁점

○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의 종료 및 그에 따른 고객정보 등의 인도 의무가 있으며, 피신청인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실질적 업무의 주체이므로 고객정보나 산출물을 반납하여야 할 약정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

○ 쟁점

- 웹 EDI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및 관련 시스템 업무위탁의 종료에 따라 수탁자에게 프로그램, 고객정보 및 그 산출물에 대한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수탁자가 업무위탁 종료 후에도 권한 없이 위탁자 소유 프로그램 및 위탁자에게 관리 권한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수입을 얻은 경우, 인도 의무 이행시점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중재결과

○ 판정

- 피신청인은 고객정보와 프로그램 및 그 산출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제공,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객정보와 프로그램 및 그 산출물을 인도하고, 위 고객정보와 프로그램 및 그 산출물 사본을 폐기할 것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69,117,739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013. 10. 1.부터 고객정보와 프로그램 및 산출품 사용을 폐지하는 날까지 월 금53,823,54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 이유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을 통해 신청인 소유의 웹EDI 솔루션을 제공받아 그것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개발을 의뢰받아 수행하였으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신청인이 웹호스팅의 방식으로 각 은행의 웹EDI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에 대한 개별 과금 및 관련 서비스와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입수한 고객정보와 기재 프로그램 및 그 산출물을 관리 및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신청인과의 이 사건 운영협력 계약을 통한 업무위탁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를 관리,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신청인은 더 이상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제공,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고객정보와 프로그램 및 산출물을 신청인에게 인도하고 그 사본을 폐기하여야 할 것임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 종료 후에 권한 없이 신청인 소유의 프로그램 및 신청인이 관리권한을 가지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3. 5.부터 9.까지 수입(기본료 및 전송료 수입)을 얻어 왔으므로 위 금액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큼 피신청인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위 프로그램 등을 신청인에게 인도하고 그 사본을 폐기할 때까지는 계속 동일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신청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프로그램 등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인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개발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으로 새로운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데 따른 비용이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손해액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3) 소 결

- 이 사건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서,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지보수 과정에서 수집·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이 데이터를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인도할 의무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음
-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 후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만 유지보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지보수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전 유지보수 업체가 변경된 유지보수 업체에 관련 데이터를 인도하지 않는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유지보수를 위한 데이터의 인도가 미뤄져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적합하다고 할 것임
- 물론 중재와 조정이 소송에 이르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중재, 특히 이 사례의 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중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조정과는 다르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향후 유사한 데이터 관련 분쟁에 대하여 중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문의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2024년 상사중재원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이 당사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IV. 분쟁조정 유형화 제안

1.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 유형의 정리 및 유형화

- 여기에서는 앞서 제2장과 제3장을 통해 살펴본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유형화를 제안하도록 함

가. 민사소송 판례(11건)

-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민사소송 판례는 총 11건으로, 거래 단계에서 문제되는 쟁점이 다루어진 판례로는 허위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사건, 데이터의 무단 활용이 문제된 사건 등이 있음
 - (생산) 데이터의 생산과 관련하여, ① 용역 검증용 원본 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한 사례, ② 데이터 전체를 허위로 생산하여 계약 상대방을 속인 사례, ③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생산하였으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의도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사례 등이 있었음 비록, 검토 대상 판례는 전체 데이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원본데이터 전체의 제공을 거부한 사안에 관한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진정한 데이터와 허위 데이터가 혼재하는 사례나 원본데이터 일부의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분쟁조정절차는 이러한 경우에 더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거래) 데이터의 거래와 관련하여, ① 데이터 제공자가 제공 계약에 따른 조치를 중단한 사례, ② 일정한 데이터를 두고 연속적 이용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 중 일부가 종료된 사례 등이 있었음
- 특히, 후자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법률관계가 복잡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을 통해 결론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바,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각 당사자들이 일부 양보하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최종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활용)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① 영업비밀 등의 무단반출하는 사례, ② 타인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사례, ③ 데이터의 파기 범위가 문제된 사례, ④ 데이터의 손실로 인하여 광고 매출에 손해가 발생한 사례 등이 있음

데이터 관련하여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서, 영업비밀에 관한 손해배상이나 경업금지 관련 분쟁 외에도,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 데이터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사례, 데이터 또는 데이터 관리 권한의 이전을 거부하는 사례, 데이터가 소실된 사례에 관한 판례로 유형을 나눌 수 있음

※ 특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고(제2항),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제3항), 향후 데이터의 사용·수익할 권리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4-1〉 분쟁 유형별 민사소송 판례

| 분쟁 유형 | | 사건명 | 사실관계 개요 | 쟁점사항 | 계약관계 | 데이터 종류 | 분쟁 해결 방식 제안 (시사점) |
|-------|--------------------------|---|---|---|----------------------|-----------------|---|
| 생산 | 용역 검증용 원본 데이터 제공 거부 | 대법원 2022다24544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나7604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3330 판결 | 용역 발주처인 피고가 용역 검증용 원본 데이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상 의무가 없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용역대금 청구 | 용역 검증을 위하여 원본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공기관 - 대학산학 협력단 용역계약 | 실험·검증 데이터 | 전문가 조정을 통한 제공 범위/방식 합의 |
| 생산 | 계약상 의무에 따르지 않은 허위 데이터 생산 | 수원지방법원 2022나60509 판결, 수원지방법 안양지원 2020가소138014 판결 | 피고는 교통량 분석을 의뢰받았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은채 전혀 다른 도로, 시점에 대한 보고서 등 지명을 기초 정보만 변경하여 제출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청구 | 허위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이행 하였는지 여부 | 민간간 용역계약 | 교통량 분석 데이터 | 조정을 통해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정한 후, 책임의 이행방법에 관해 당사자 수용 범주내로 자유롭게 결정 |
| 생산 | 용역 계약상 불충분한 데이터 생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6381 판결 |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인 ◇◇ 데이터의 수집, 분석업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발전단지의 사업 타당성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 ◇◇계측기 1기를 설치하여 얻은 데이터만으로 사업타당성 평가가 어려운 경우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간간 용역계약 | ◇◇계측 데이터 | 데이터 분석 전문가 검토가 바탕이 된 다양한 해결책 제시 |
| 거래 | 데이터 이용 계약의 중단 |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7303(본소), 2019가단100261(반소) 판결 ; 대전지방법원2021나127765(본소), 2021나127772(반소) 판결 | 피고는 원고와 지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데이터 자료를 유상으로 매수하였으나, 원고가 ■■영업 관련 전산시스템을 중단 및 폐쇄하여 해당 자료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함 | 원고의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 대리점 계약 | ■■ 영업용 방송광고 데이터 | 조정을 통해 금전적 배상 외에 데이터 이용기간 연장 등 유연한 타협 |

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판례분석 및 분쟁조정 유형화 제안

| 분쟁 유형 | | 사건명 | 사실관계 개요 | 쟁점사항 | 계약관계 | 데이터 종류 | 분쟁 해결 방식 제안 (시사점) |
|-------|----------------------|--|---|---|-----------|------------------------------|--|
| 거래 | 데이터 이용 계약의 중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8028 판결 | 원고(지도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가 A와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와 지도서비스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는 피고와 콘텐츠사용계약을 체결함 이후 원고와 A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의 지도 데이터를 계속하여 사용함 | 피고의 데이터 계속 이용이 저작권법상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에게 A/B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콘텐츠 사용계약 | GIS 수치지도 데이터 | 사법부의 일도양단식 결론보다는, 후속 계약 체결 통한 이용 지속 방안 모색 등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는 해결책 제시 |
| 활용 | 데이터의 목적외 활용, 부정경쟁 행위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93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가합27697 판결 | 원고들이 H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영업 비밀서약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재직 중에 건적의뢰서 등이 포함된 파일을 개인 메일 등으로 전송함 |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데이터의 부정 이용시 적용 법령, 이메일을 전송한 시점 이후에 데이터산업법이 제정된 경우 적용 법령 | 직원 고용계약 | 공공기관 견적 의뢰서, 납품 가격 및 매입단가 정보 | 행위시점에 따라 데이터산업법 제12조 적용가능성 있으므로 조정시 적용법령의 결정에 참고 |
| 활용 | 데이터의 무단 활용 |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494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나50929 판결 | 피고는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 □□ 예측이 모두 틀렸다, 원고는 사기를 치는 수준이다, △△△ 먹는 사기꾼이다'는 취지로 원고를 비방, 모욕하는 글을 작성·게시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예측자료를 무단으로 게시 |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에 해당하는지,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유료 콘텐츠 판매 | □□□ □□ 예측 자료 |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을 중심으로 법원 위탁 조정 처리에 적합 |

IV. 분쟁조정 유형화 제안

| 분쟁 유형 | | 사건명 | 사실관계 개요 | 쟁점사항 | 계약관계 | 데이터 종류 | 분쟁 해결 방식 제안 (시사점) |
|-------|-----------------------|---------------------------|---|---|-------------------|--------------------|---|
| 활용 | 영업비밀 데이터 부정취득 |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9963 판결 | 원고는 E대학교 ○○○○○○학부의 ○○○○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원 신규 채용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연구실에서 퇴사하면서 연구실 내 4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을 외부 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하여 들고 나옴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수-연구원 연구실 근무관계 | △△△△ 관련 실험 프로토콜 |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보다 용이·신속하게 판단하여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 활용 | 타인의 △△△ 정보 데이터의 무단 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947 결정 | 채무자는 채권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추출하여 유사한 앱을 만들어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선형 가처분에서 패소를 하였음에도, 해당 앱을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앱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함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권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 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경쟁 사업자 간 분쟁 | △△△ 정보 데이터 | 양측이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간 상이점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종결 달성 |
| 활용 | 데이터의 파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0653 판결 | 원고와 피고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웹&앱 개발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웹&앱”에 필요한 모든 기반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개발 과정에서 해킹이 발생함 원고는 비밀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비밀유지서약서 등에서 규정하는 ‘비밀정보’의 범위에 원고가 제공한 데이터 외에 고객사가 입력한 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 | 위탁개발 계약 및 비밀유지 계약 | 개발 기반자료, 고객 입력 정보 | 정보의 성격 (비밀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으로 분쟁의 조기 종결 |
| 활용 | 데이터의 손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2311 판결 | IDC에 디도스 공격 방어 보안 장비 설치 이후 광고클릭 데이터의 손실로 인하여 광고 매출에 손해가 발생한 사례 | 데이터의 손실로 인한 손해 발생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 | 광고 수입을 위한 광고클릭 데이터 | 데이터 손실에 관한 분쟁은 데이터 분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계약 시 내용에 데이터 포함 필요 |

나. 행정소송 판례(6건)

○ 본 연구에서 살펴본 행정소송 판례 및 기타 사례는 총 6건임

- (생산) 데이터의 생산과 관련하여, ① 허위 데이터 생성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례, ② 데이터 변조로 인하여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이 있었음
- 참여제한 등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분쟁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연구 윤리와 데이터를 하나의 선상에서 검토하기보다는 차등을 두어 연구 윤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정확성 등에 대한 조정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거래) 데이터의 거래와 관련하여, ① 용역계약에 따른 시제품 납품 미달 및 원본 데이터 제출 위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한 사례, ② 데이터 정확성 기준 미달, 데이터 형식 및 범위 불일치 발생으로 지원금 환수한 사례 등이 있었음
- 판례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조건 준수'와 관련하여 원본데이터 제출의무가 있는지, 보고서와 실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등이 사례로 다루어질 수 있고, '데이터의 정확성·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실험 데이터의 조작, 오류의 방치 등이 사례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안에 따라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이나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며 개인정보 외에 이종의 다른 법적성격을 갖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개별적인 질의 또는 조정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서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등 각각의 데이터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여러 성격의

데이터가 연계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제도 개선을 한다면 조정을 신청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혼합)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의 혼합과 관련하여 ① 연구개발 계약 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성능평가 미달 및 관련 시험 결과 데이터를 조작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한 사례, ② 용역계약에 따라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충족 및 인증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계약 해지 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한 사례 등이 있었음
- 데이터와 관련한 분쟁이 분쟁 유형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유형에 걸쳐 중복으로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분쟁조정 유형을 단일한 유형들로만 구성하기보다는 한층 더 다양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데이터와 관련된 행정소송에는 데이터의 허위생성, 변조, 조작 등을 근거로 한 참여 제한처분이나 연구비 또는 지원금 등의 환수를 다투는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소송법」에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제6조 제1항)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
- 실무상 이른바 ‘사실상 조정·화해’의 방식에 의한 실무례가 있어 왔는데, 여기서 ‘사실상 조정·화해’는 재판부가 피고(행정청)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으로 처분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원고에게는 변경처분이 이뤄지면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조정권고를 한 다음, 피고가 변경처분을 하면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는 관행을 말함⁹⁾
- 다만 이러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 2016., 370면(박현정, 행정소송에서 조정제도 도입방향, 인권과 정의, 2022.6, 55면에서 재인용)

- 행정심판법에서는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2018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제1항)
 - 그러나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사와 달리 행정은 공익 추구 및 법치주의로 인해 분쟁의 조정 역시 차이점이 있는데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기속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조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정을 위한 법률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조정 결과가 직접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 또는 부관부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¹⁰⁾
 - 이외에도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것을 취소하기로 하는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합의를 위한 금전을 행정청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득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¹¹⁾ 민사 분쟁에서처럼 금전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법원의 조정권고 없이 처분청과 피처분자가 분쟁조정절차에서 합의를 하여 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행정소송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청이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전 단계에서 조정을 통해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행정청이 추진하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분쟁의 신속한 해결, 처분 당사자의 수용성 제고 및 정책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데이터 관련 행정소송 또는 심판 중** 데이터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나 법위반 수준이 경미한 사건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김용섭, “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인권과 정의, 2022.06., 31-32면.

11) 김용섭, 앞의 논문, 31면.

〈표 4-2〉 분쟁 유형별 행정소송 판례 및 기타 사례

| 분쟁 유형 | | 사건명 | 사실관계 개요 | 쟁점사항 | 계약관계 | 데이터 종류 | 분쟁 해결 방식 제안 (시사점) |
|--------|--------------|--------------------------|---|--|-----------------------------|-----------------|--|
| 생 산 | 데이터 허위 생성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872 판결 | 원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성과로 제출한 논문에 허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를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하였음 | 논문 내 오차범위 데이터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허위 데이터 생성으로 인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 | 국가연구 개발과제 | 논문 데이터 | 허위 데이터는 이를 공표함으로써 다른 데이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 |
| 생 산 | 데이터 변조 | 대전고등법원 2020누10928 판결 | 연구 지원사업 협약 체결 이후, 원고가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 사용하는 등 일부 데이터를 변조하여 논문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행위를 연구부정으로 판단하여 사업참여제한 처분을 내림 | 중복데이터 사용 등 데이터 변조로 인한 사업참여제한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 |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 사업 협약 | 논문 데이터 | 연구기간 중 발생하는 데이터 변조는 제재 처분보다 조정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로 연구를 완료할 수 있게 필요가 있음 |
| 거 래 | 데이터 제공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421 판결 | 용역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시제품 납품 미달 및 원본 데이터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림 | 원고가 제출한 보고서와 납품 시제품이 불일치하는지, 원고가 원본데이터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피고가 내린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지역소득 개발연구 사업 계약 | 시제품 제작 원본데이터 | 원본 데이터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소송 전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 분쟁 유형 | | 사건명 | 사실관계 개요 | 쟁점사항 | 계약관계 | 데이터 종류 | 분쟁 해결 방식 제안 (시사점) |
|----------|----------------|--------------------------|--|---|------------------------|--------------------------|---|
| 거래 | 데이터 제공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65 판결 | 데이터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간 계약 체결 이후, 공급기관이 제공한 데이터가 정확성 기준에 미달하고 형식·범위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지원금을 환수하였음 | 협약의 법적 성격과 채무의 존부, 데이터의 기준 미달 제공 여부를 바탕으로 한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의 적법성 | 데이터 지원사업 협약 | 데이터 지원사업에 따른 수요기관 요청 데이터 | 지원금 환수 이전 조정을 통해 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지원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함 |
| 생산 거래 | 데이터 품질 및 제공 | 서울고등법원 2018누74497 판결 | ███탄 연구개발 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 결과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음 |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허위서류 제출 및 계약조건의 무효 여부 | ○○○○○ 연구개발 계약 | 성능평가 시험 데이터 | 데이터의 조작으로 인한 허위 데이터 생성의 경우 사업 기간 전후로 조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 필요 |
| 생산 거래 활용 | 데이터 생성, 거래, 활용 | 서울고등법원 2018누35843 판결 | 용역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음 | 프로그램의 데이터 검색기능이 사업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특수사항 충족 여부 및 불충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지적문서 암호화 및 고도화 용역사업 계약 | 데이터 암호화, 검색 데이터, 연계 데이터 | 단일한 유형의 데이터 외에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유형을 다양화하고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 유사 영역 분쟁조정사례

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4건)

○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는 총 3건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임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데이터 관점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여 일정부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만한 분쟁의 유형을 제안하였음

| 구분 | 사실관계 개요 | 가상시나리오 |
|----|---|--|
| 생산 | 동의 없는 CCTV 열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근무 담당자가 신청인의 결근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명을 거부하자 CCTV 열람을 통해 영상을 확인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주장한 사례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학습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의 정보주체가 면책 적용의 제외를 요구하면서 인격권적 침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주장할 여지 |
| 활용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콜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해 동의없이 광고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례 | 인터넷상의 IP 주소나, 쿠키를 수집하는 경우 이들 정보값의 경우 개인정보성(결합가능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이 불분명한 데이터 자산이므로, 명확히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보 활용의 경우 |
| 활용 |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 의료자문에 이용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질환정보를 다른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적 목적의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권적 손해에 대한 주장이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이 병합적으로 문제 |
| 거래 | 데이터제공 하수도법에 따라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번별 물사용량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법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 개인정보, 데이터기반행정 등 둘 이상의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데이터 분쟁 조정의 경우 |

2)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6건)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는 총 6건으로, 저작권 분쟁조정인 경우 대부분 저작물을 대상으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저작물의 유형별로 침해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데이터 관점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여 일정부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만한 분쟁의 유형을 제안하였음

| 구분 | | 사실관계 개요 | 가상시나리오 |
|----|---------------------------|---|--|
| 생산 | 뉴스기사에 대한 무단복제 | 뉴스 기사를 무단복제한 것이 문제되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단순 사실 자료와 같은 기사는 창작성을 갖지 않아 모든 뉴스 기사가 저작물인 것은 아니어서 상당한 노력이 투자된 데이터산업법상의 데이터 자산에 해당할 여지 |
| 거래 | 미술작품 무단 철거에 따른 저작권권 분쟁 | 미술작품의 무단 철거가 저작권권 혹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 | 디지털 환경에서 화상디자인이나 삽화, SNS 통해 끄적임 메모, 캐치프레이즈 등이 웹페이지 폐쇄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소실·멸실되는 경우 데이터자산 침해 |
| 생산 | 공동저작자 여부에 관한 분쟁 | 애니메이션 제작 초기 단계에서 최종 반영된 시나리오의 완성 이전 단계에서 집필에 참여한 신청인이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 사례 | 최종 가공데이터에 기여한 당사자간 지분권 분쟁이 존재 가능. 기여의 존부 쟁점을 비롯, 사전에 정한 지분권의 비중에 대한 변경 필요성에 대한 분쟁 등의 요소 |
| 생산 | 공동저작자 여부에 관한 분쟁 | 집필계약에서 신청인이 창작한 극본을 방송프로그램에 출품한다고 정하였으나, 극본 출품행위에 대해 계약 위반 주장 사례 | 데이터 자산의 경우에도 공동생성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공동생성데이터를 계약단계에서 어떠한 사항을 정하느냐에 따라 동의범주 혹은 계약에 따른 처분 및 이용허락 범위 문제 |
| 활용 | 음악변형 사용으로 인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 무단으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 사례 | 데이터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하는 허용하는 범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이를테면 제공받은 데이터와 동일성은 유지한 채 일부 변경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등 계약 위반의 소지 |
| 활용 | 음악의 이용허락 여부에 관한 분쟁 | 신청인이 대가의 지급없이 음원을 이용하는 것을 협상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별도의 요구 조건 없이 응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사건 | 고가치의 데이터일수록 이용허락의 범주와 관련하여 계약상 예견 가능한 허락 범위에 대한 분쟁 여지 |

3)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10건)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는 총 10건으로, 콘텐츠 분쟁조정 경우 영상, 지식정보, 만화, 캐릭터 등의 영역별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게임 아이템, 약관 정책, 결제·환불, 서비스 오류, 허위광고 등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데이터 관점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여 일정부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만한 분쟁의 유형을 제안하였음

| 구분 | | 사실관계 개요 | 가상시나리오 |
|----|-------------------------------|--|--|
| 활용 |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 개인정보 유출 내역 확인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에 관한 사건 | 개인정보(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침해와 관련된 사례화 가능 |
| 활용 | OTT 계정 정보 유출 의심 사례에 대한 대응 요청 | 개인정보 유출 내역 확인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에 관한 사건 | 개인정보(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침해와 관련된 사례화 가능 |
| 활용 | 게임 내 특정 캐릭터 소실관련 환불요청 | 게임에서 캐릭터가 사라지는 오류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환불요청 | 캐릭터의 소실로 인해 그간 게임한 기록과 캐릭터의 정보가 함께 소실되었다면 이는 데이터 소실에 대한 문제 |
| 활용 |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계정의 이용제한 해제 요청 | 아이디/패스워드가 도용되어 본인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플랫폼 계정이 이용제한 된 것에 대해 해제를 요청한 사안 | 아이디/패스워드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가능성 및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데이터분쟁조정 가능 |
| 활용 | 게임 아이템 소실로 인한 피해 | 게임 아이템 소실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 사안 | 게임을 통해 일궈놓은 캐릭터는 재화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데이터 분쟁조정 가능 |
| 활용 | 의뢰인의 작업물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비율 조정 요청 |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용역계약에서 작업물의 품질과 관련한 환불요청 사례 | 콘텐츠 제작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데이터의 가공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작업물이 대상인 경우 데이터분쟁조정 가능 |
| 활용 |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정기결제 정책 불만 |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정기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한 사례 | 신청인은 음원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계약한 것이므로 이는 데이터 제공 계약에 해당 |

| 구분 | | 사실관계 개요 | 가상시나리오 |
|----|---------------------------------------|---|---|
| 거래 | 소프트웨어 제작 계약 용역대금 반환 청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의 불완전 이행과 관련된 사례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 및 공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된 학습데이터와 파라미터 값 혹은 분석결과에 해당하는 파생데이터 등의 소유 권한 분쟁 여지 |
| 활용 |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서 수강여부 관련 데이터 오류에 따른 환불 요청 |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수강과 관련하여 잦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수강료의 환불을 요구한 사례 | 수강여부에 대한 데이터 오류가 계약관계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쟁점이어서 데이터 분쟁조정 가능 |
| 활용 | 상품 설명정보(데이터)의 미비에 따른 환불 요청 | VOD 서비스 시청과 관련하여,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상세설명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한 사안 | 상품과 관련하여 제공된 데이터(정보)의 미비로 인한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이므로 데이터분쟁 조정 가능 |

4) 상사중재 사례(1건)

- 데이터제공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서 계약에 기초하여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생성·수집한 데이터를 계약 종료 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사례로서 유지보수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이전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구분 | | 사실관계 개요 | 가상시나리오 |
|----|-------|--|--|
| 거래 | 데이터제공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업체에게 계약 종료 이후 위탁자가 데이터의 인도를 요청한 사례 | 유지보수 등 위수탁계 종료 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의 인도 여부 |

2. 데이터 분쟁 유형별 분류체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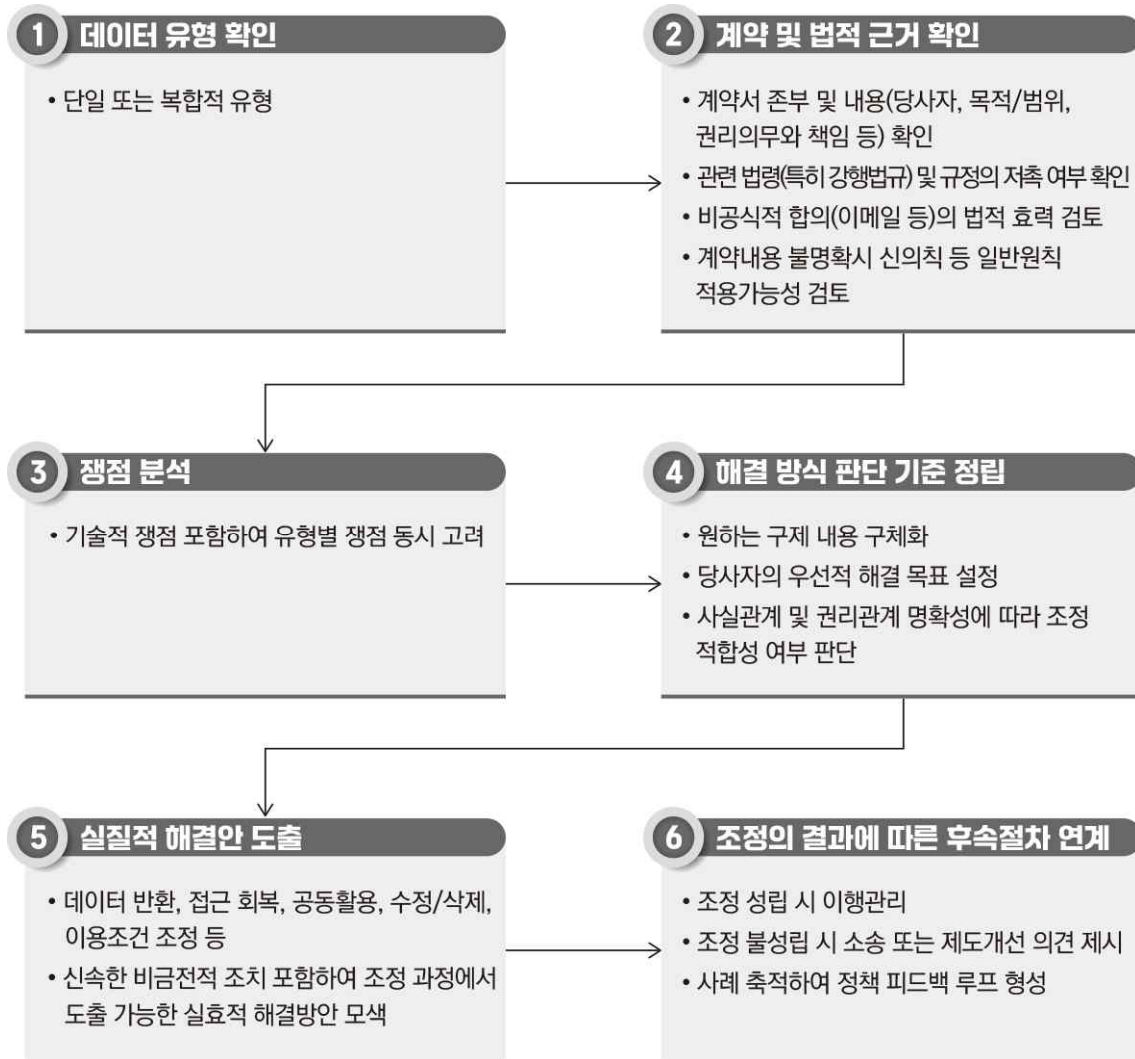
- 데이터 거래, 생산, 활용 등으로 분쟁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산업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실무상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데이터의 거래나 활용은 데이터의 수집·생산으로부터 이루어지며, 데이터의 활용은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중첩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실무상 분쟁의 여지가 있는 쟁점을 위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해 보았음
- 이하에서는 데이터 분쟁 유형 분류체계를 도표로 정리하고, 데이터 분쟁 유형 중 자주 나타나는 사례별 분쟁해결방안을 조기에 모색하기 위한 데이터 분쟁절차 흐름도를 제시해 보고자 함

〈표 4-3〉 데이터 분쟁 유형 분류체계¹²⁾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비고 |
|-----|------------|----------------------|---------------------------|
| 생산 | 데이터 생산 불능 | | 원본데이터 및 결과 검증데이터 모두 해당 |
| | 허위데이터 생산 | 데이터 윤리 | |
| | 불완전 데이터 생산 | 데이터 품질 하자 | |
| | | 데이터 형식 하자 | |
| | | 데이터 일부 생산 | |
| | | 제3자 권한 침해 | |
| | 데이터 제출 미비 | 데이터 제출 의무 확인 | |
| | | 데이터 미제출 | |
| | | 데이터 불완전 제출 | |
| | | 허위 데이터 제출 | |
| 거래 | 데이터 제공 불능 | 데이터 미보유 | |
| | | 데이터 손실 | |
| | | 제3자 권한 침해 | |
| | 데이터 불완전 제공 | 데이터 사용 제한 | 형식, 기간 등 |
| | | 저품질 데이터 제공 | |
| | | 데이터 수량 부족 | |
| | | 제3자 권한 침해 | |
| | 무권한 이전 | 권한 없는 거래(판매) | |
| | | 권한 없는 단순 제공/공유 | |
| | | 권한을 초과한 이전 | |
| 활용 | 무권한 활용 | 권한 없이 활용 | |
| | | 권한을 초과한 활용 | |
| 기타 | 무권한 보유 | 권한 없이 보유하는 경우 | |
| | | 보유 기간 도과 (데이터 삭제) | 의무 존재 시 |

12) 각각의 분류 유형은 둘 이상 중복될 수 있음

[그림 4-1] 데이터 분쟁절차 흐름도



V. 결론

- 데이터 경제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데이터 활용에 기인한 법적 분쟁이 복잡화·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본 연구는 데이터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주요 민사·행정 판례 및 데이터 관련 유사 영역 분쟁조정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 분쟁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분쟁의 유형을 구조화하여 데이터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판례 분석 결과, 데이터 분쟁은 생산, 거래, 활용의 세 축을 중심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데이터의 법적 성격,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이행 여부, 권리 충돌 및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데이터가 단순한 정보 자산을 넘어 독립적인 경제재로서 작용함에 따라, 원본 데이터의 제공, 무단 활용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데이터 손실에 따른 피해 등 실질적 쟁점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함
- 아울러 개인정보, 저작권, 콘텐츠 등 유사 영역의 분쟁조정 사례를 함께 검토한 결과, 실제 데이터 분쟁은 단일 법령에 의해 해결되기보다 다양한 법적 성격이 중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현행 데이터 분쟁조정제도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기존의 법령 체계로 인한 한계와 법적 강제력의 한계, 조정 기구 간의 분절적 운영 등으로 인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 법령 중심의 분절된 조정보다, 데이터의 생성·거래·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조정기능을 갖추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편이 요구됨

-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조정체계 도입을 통해 분쟁의 실질적 해결 가능성과 당사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소송법」에 조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부재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법무부 지휘 요건 등이 조정의 실질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바,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조정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방식의 제도 운영이 요구됨
- 또한 향후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 범위 확대 및 통합적 조정 권한의 부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분쟁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기술·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조정 체계를 도입하고, 개별 법령 중심의 분쟁 해결에서 벗어나 데이터 활용 구조에 기반한 통합적 분쟁 유형 분류와 조정 체계 마련이 요구됨
-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단순한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을 넘어 데이터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 해결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조정의 접근성·전문성·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란?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 ☑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공공·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내용에 따라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데이터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법조계

학계

공공·산업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문의처

TEL 053.230.4202

E-mail ddrc@nia.or.kr

데이터 분쟁과 관련한 상담 및 사전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ddrc.go.kr



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안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와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쟁조정 신청 방법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ddrc.go.kr

☑ 신청 절차



- 1  분쟁조정 신청접수
- 2  조정부 구성 (3인 이내 위원)
- 3  사실관계 확인 & 당사자 의견 청취
- 4  조정안 제시
수락시
- 5  조정성립

데이터 분쟁조정 방법 사례

☑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에 관한 분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데이터의 생산, 가공 등이
계약과 다른 경우
-  납기 지연, 비용 미지급 등
계약이 이행 되지 않은 경우
-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등







데이터 분쟁조정 성립 후, 소송은?

- 양 당사자가 데이터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조정조서)됩니다.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소송은 제한됩니다.

데이터 분쟁조정 Q&A



-  데이터 분쟁조정 **장점**은 무엇인가요?
 -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분쟁조정 **신청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분쟁조정 사실확인을 위해 **당사자 의견청취**
및 **현장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정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 데이터 분쟁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5일 이내**
에 해결책(조정안)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모두
동의할 경우 분쟁은 **해결(조정성립)** 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 기한 연장 가능
-  **비용**은 얼마인가요?
 - 데이터 분쟁조정 비용은 **무료**입니다.
※ 단, 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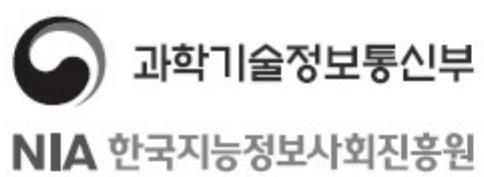
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판례분석 및 분쟁조정 유형화 제안

발행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연구자 곽정민, 송도영, 윤종인, 정원준, 이한송

홈페이지 ddrc.go.kr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